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 일 반 회 계
- ▣ 특 별 회 계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 연 연 구 기 관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 문 위 원 황승기

제1장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I . 개 요	1
1. 총 괄	1
2. 세입·세출예산안	4
3. 성과계획서	18
4. 성인지예산	20
II. 검토의견	21
1.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국선대리인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21
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실적을 고려한 수당편성 필요	27
3.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기한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필요	31
4.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기관역량진단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	41
5.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청년친화도시 사업 지원액 감액 조정 필요	49
6. 공직복무 관리: 기본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이관 필요	54
7.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 및 포털 광고비의 감액조정 필요	58

제2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I. 개 요 64

1. 2025년도 예산안 규모 64
2. 비목별 예산안 내역 64

II. 검토의견 72

1. 연구기관 공통: 수시연구사업 활성화 필요 72
2. 연구기관 공통: 협동연구 추진체계 개선 76
3. 연구기관 공통 : 예산변경 관련 제도개선 필요 82
4. 연구기관 공통 91
 - 1)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을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사업으로 변경 필요 .. 91
 - 2) 국가승인통계조사 관련 사업을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사업으로 변경 필요 99
5. 연구기관 공통: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중단 필요 103
6. 연구기관 공통: 능률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 등 규정 개정 필요 ... 109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118
8.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육협력 및 지식교류포럼 내실화 123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청년 대상 조세교육 필요 128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성과 홍보 효과성 제고 필요 133
1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수요조사결과 환류 필요 138
12. 한국행정연구원: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공개 143
13.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매각 지연 개선 필요 148

14. 국토연구원: 연구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연구과제 추진 필요 .. 152
15.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의 차별화 필요 158
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침에 부합하는 외부용역비 비목 편성 필요 .. 163

제1장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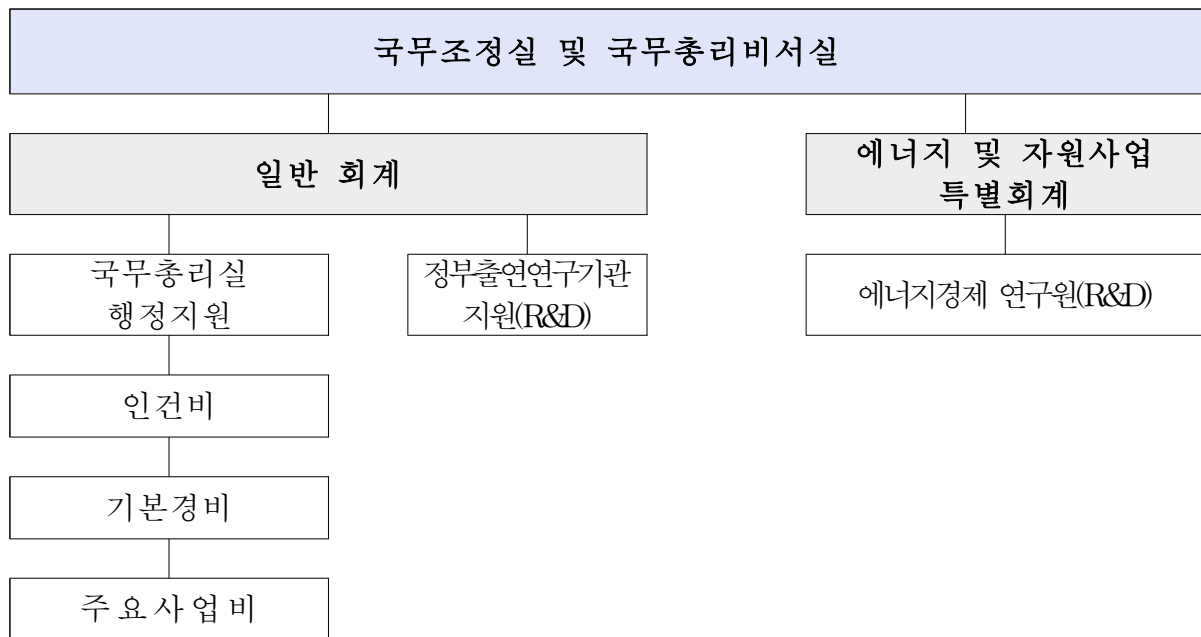
I. 개 요

1. 총 괄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구조도〉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 7,90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625억 600만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3억 7,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23	279	256	1,113
일반회계	23	279	256	1,11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	-	-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660,550	674,880	14,330	2.2
일반회계	648,919	662,506	13,587	2.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1,631	12,374	743	6.4

주) 총계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5년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로 두고,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5대 중점과제를 설정·추진한다는 계획임.

〈2025년도 5대 중점과제〉

①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 국정과제의 체계적 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강화 등을 통하여 국정성과에 대한 대국민 체감 제고
②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 적극적·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해 원활한 국정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대테러·미세먼지 대책 등의 조정 및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 보호
③ 규제개혁
○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
④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중장기 과제 이행 지원
⑤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 국무총리 국정활동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협력 증진

(자료: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계획서)

-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5년도에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것을 핵심전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전략목표 1 :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46,670	100.0
합 계	46,670	100.0

(출처: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민간경상보조금 정산금 및 국고계좌 이자 세입조치 등 기타재산이자 수입 200만원과 과오지급금 반납 및 정산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2억 7,700만원을 합하여 2억 7,9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안 대비 1113% 증가한 규모임.

<2025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23	279	256	1,113
○ 기타재산이자수입	1	2	1	100
○ 기타경상이전수입	22	277	255	1,159

(2) 세출예산안

□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625억 6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대비 135억 8,700만원(2.1%)이 증액 편성됨.

- 2024년도 예산 대비 인건비는 10억 5,200만원(1.8%)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3억 2,800만원(2.4%) 증가하였음. 주요사업비는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에서 24억 2,400만원 증액되는 등 31억 9,100만원(6.2%) 증가하였고, 출연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금이 33억 4,500만원, 국토연구원 출연금이 22억 200만원 증액되는 등 90억 1,600만원(1.7%) 증가함.

〈2025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648,919	662,506	13,587	2.1
인건비	59,222	60,274	1,052	1.8
기본경비	13,927	14,255	328	2.4
주요사업비	51,209	54,400	3,191	6.2
출연금	524,561	533,577	9,016	1.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가. 인건비

-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602억 7,4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0억 5,200만원(1.8%) 증가함.

- 보수 및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 반영으로 인하여 2024년도 예산 대비 각각 16억 1,900만원, 2,100만원 증가함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59,222	60,274	1,052	1.8
○ 세목별	59,222	60,274	1,052	1.8
- 보수(110-01)	56,845	58,468	1,623	2.9
- 기타직보수(110-02)	1,931	1,343	△588	△30.5
- 연가보상비(110-05)	446	463	17	3.8
○ 기관별	59,222	60,274	1,052	1.8
- 국무조정실	38,169	38,485	316	0.8
- 국무총리비서실	9,443	9,546	103	1.1
- 조세심판원	11,610	12,243	633	5.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기본경비

□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42억 5,5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3억 2,800만원(2.4%) 증가함.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8억 3,5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대비 1,000만원(0.2%) 증가하였으며,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94억 2,0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대비 3억 1,800만원(3.5%) 증가함.

○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이 2024년도 예산 대비 증가한 것은 총액인건비 비대상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예산에 5년주기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소요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액납부('24년도 대비 42백만원 증가) 등 특이소요 반영에 기인한 것임.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13,927	14,255	328	2.4
○ 기본경비(총액)	4,825	4,835	10	0.2
- 국무조정실	2,955	2,950	△5	△0.2
- 국무총리비서실	1,155	1,170	15	1.3
- 조세심판원	715	715	0	0.0
○ 기본경비	9,102	9,420	318	3.5
- 국무조정실	6,365	6,540	175	2.7
- 국무총리비서실	1,395	1,440	45	3.2
- 조세심판원	1,342	1,440	98	7.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다. 주요사업비

□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544억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31억 9,100만원(6.2%)이 증가함.

○ 주요사업비가 2024년도 예산 대비 증가한 것은 ODA 통합정보포털 개편 및 ODA 협업예산 확대 등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세부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이 2024년 예산 대비 24억 2,400만원 증가하였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내부 정보화’ 세부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이 2024년 예산 대비 8억 1,700만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함.

〈2025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증 감	
	예산(A)	예산안(B)	(B-A)	(B-A)/A
합 계	51,209	54,400	3,191	6.2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77	230	53	29.9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1,346	1,346	0	0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724	2,845	121	4.4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1,242	1,242	0	0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	-	199	199	순증
공공기관 갈등관리	350	350	0	0
대테러센터 운영	674	710	36	5.3
인권보호관 지원	386	410	24	6.2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88	537	449	510.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759	2,120	361	20.5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2,237	2,528	291	13.0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5,154	4,443	△711	△13.8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	105	96	△9	△8.6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2,972	5,396	2,424	81.6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108	107	△1	△0.9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159	144	△15	△9.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3,410	3,460	50	1.5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8,984	7,034	△1,950	△21.7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5,165	5,049	△116	△2.2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481	442	△39	△8.1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729	628	△101	△13.9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169	-	△169	순감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183	83	△100	△54.6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3,473	3,446	△27	△0.8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	192	192	순증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1,139	1,153	14	1.2
내부 정보화(정보화)	1,655	2,472	817	49.4
공직복무 관리	868	974	106	12.2
국무총리 공관관리	1,126	400	△726	△64.5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499	1,499	0	0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433	303	△130	△30.0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9	712	3	0.4
광복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	2,129	2,129	순증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67	570	3	0.5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984	934	△50	△5.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	154	217	63	40.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는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5,300만원 (29.9%) 증액된 2억 3,000만원이 편성됨.
- ‘국정운영 정보화’는 국무·차관회의 운영, 대통령 재가 및 국정과제 관리 등을 실시간 처리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3억 4,600만원이 편성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은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대비 1억 2,100만원(4.4%) 증액된 28억 4,500만원이 편성됨.
- ‘전자통합평가 정보화’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2억 4,200만원이 편성됨.
-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은 정책 현장에서 정부와 국민이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현장방문형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억 9,9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공공기관 갈등관리’는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5,000만원이 편성됨
- ‘대테러센터 운영’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24시간 상황관리 및 사건 대응, 테러 대상시설·이용수단 관리, 교육·홍보·실전 훈련을 통한 대테러 대응 역량 강화 등 범국가적 테러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600만원(5.3%) 증액된 7억 1,000만원이 편성됨.
- ‘인권보호관 지원’은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400만원(6.2%) 증액된 4억 1,000만원이 편성됨.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정책 조정·수립, 계절관리제 실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및 국민건강 보호 방안 시행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억 4,900만원(510.2%) 증액된 5억 3,700만원이 편성됨.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억 6,100만원(20.5%) 증액된 21억 2,000만원이 편성됨.

○ ‘규제개혁 정보화’는 규제 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정보시스템(내부)과 규제정보포털·규제개혁신문고(외부)를 구축·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9,100만원(13.0%) 증액된 25억 2,800만원이 편성됨.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개별 부처의 주도적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7억 1,100만원(13.8%) 감액된 44억 4,300만원이 편성됨.

○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사업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900만원(8.6%) 감액된 9,600만원이 편성됨.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ODA 전략·정책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ODA를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4억 2,400만원(81.6%) 증

액된 53억 9,600만원이 편성됨.

-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과 세월호 피해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00만원(0.9%) 감액된 1억 700만원이 편성됨.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은 새만금사업 주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새만금위원회 운영과 새만금사업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500만원(9.4%) 감액된 1억 4,400만원이 편성됨.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의 제도나 경험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수 교육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5,000만원(1.5%) 증액된 34억 6,000만원이 편성됨.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은 부처별로 산재된 청년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의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개선·보완으로 청년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9억 5,000만원(21.7%) 감액된 70억 3,400만원이 편성됨.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은 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소외계층·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1,600만원 (2.2%)이 감액된 50억 4,900만원이 편성됨.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은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관련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900만원(8.1%)이 감액된 4억 4,200만원이 편성됨.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은 지속가능발전 위상 제고·추진체계 강화 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정책 연구·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100만원(13.9%)이 감액된 6억 2,800만원이 편성됨.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은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관으로 설치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25년도에 사업이 종료됨.
-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은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장기의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정책 이행 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원(54.6%)이 감액된 8,300만원이 편성됨.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은 중앙부처·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청년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700만원(0.8%)이 감액된 34억 4,600만원이 편성됨.
-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는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시 납세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억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는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능력 있고 출선하는 총리실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400만원(1.2%) 증액된 11억 5,300만원이 편성됨.
- ‘내부 정보화’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내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보서비스 제공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8억 1,700만원(49.4%) 증액된 24억 7,200만원이 편성됨.

- ‘공직복무관리’는 공직비위 상시점검을 통한 공직사회 기강확립, 부조리 예방 및 제도개선, 우수공무원 발굴·포상을 통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600만원(12.2%) 증액된 9억 7,400만원이 편성됨.
- ‘국무총리 공관관리’는 공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적절한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7억 2,600만원(64.5%) 감액된 4억원이 편성됨.
-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은 국무총리 내각통할 및 원활한 국정활동수행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4억 9,900만원이 편성됨.
- ‘조세심판 정보화’는 조세검색서비스 제공 및 사건접수, 배정, 발송, 통계작성 등 내부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3,000만원(30.0%) 감액된 3억 300만원이 편성됨.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은 부패사각지대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예방을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추진 등 기존 반부패 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00만원(0.4%) 증액된 7억 1,200만원이 편성됨.
- ‘광복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

이하에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1억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는 뉴미디어 채널 운영을 통해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00만원(0.5%) 증액된 5억 7,000만원이 편성됨.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는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5,000만원(5.1%) 감액된 9억 3,400만원이 편성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6,300만원(40.9%) 증액된 2억 1,700만원이 편성됨.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025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7억 4,300만원(6.4%) 증액된 123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금임.

〈2024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세입예산	-	-	-	-
세출예산	11,631	12,374	743	6.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5년도 임무로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 제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 성과를 제고한다’를 기관 임무로 설정하고,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1가지 전략목표(‘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와 1개의 프로그램 목표(‘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를 설정하였음.

- ☐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관리과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개)	1	1	6	2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사업코드	비고
전략목표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프로그램목표 I-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1)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7000-7031	정보화 세부사업 포함
	(2)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7000-7032	
	(3) 규제개혁	7000-7033	정보화 세부사업 포함
	(4)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7000-7035	정보화 세부사업 포함
	(5) 행정지원	7000-7036	
	(6)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7000-703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 성인지 예산¹⁾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음.

1) 성인지 예산서 :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II. 검토의견

1. 조세심판원 기본경비²⁾,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³⁾: 국선 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는 조세심판원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800만원(7.3%)이 증가한 14억 4,000만원임.

〈2025년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3,595	1,342	1,342	1,440	98	7.3

(자료: 조세심판원)

-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시 납세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억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	-	-	192	192	순증

(자료: 조세심판원)

2) 세부사업: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3) 세부사업: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5-325)

2) 검토의견: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홍보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심판원은 세법지식 부족,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액·영세납세자가 사건조사 및 심리단계에서 무료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와 같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운영 중임.

- 「국세기본법」 제59조의2는 일정 요건⁴⁾에 해당하는 심판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조세심판원은 이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⁵⁾

4) 국선대리인 선정요건

1. 개인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법인 :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법인으로서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3. 공통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관세 제외

- 5)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종합소득 5천만원, 소유재산 5억원 이하)
 -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수입 3억원, 자산 5억원 이하)
2. 삭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5천만원 이하)

□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사업에 매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대리인 수당(3천만원)과 제도 홍보(1천만원)를 위하여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런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연도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조세심판원의 사건 접수건수⁶⁾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선대리인 운영 횟수는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태이며, 국선대리인 수당 및 홍보비 집행 실적 역시 부진한 상태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연도별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9.
국선대리인 운영 횟수		33회	17회	36회	15회	31회	27회
예산액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40,000
집행	대리인수당	4,650	1,650	1,800	1,950	5,850	3,750
	홍보비	1,771	-	-	2,717	2,717	-
	합 계	6,421	1,650	1,800	4,667	8,567	3,750

(자료: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원은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부진과 관련하여, 제도 홍보를 위해 팜플렛을 제작해 전국 세무관서 등에 비치하고 있지만 충분한 홍보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① 심판청구 가능 세액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사건 접수 건수: 2019년 8,658건 → 2021년 13,025건 → 2023년 16,781건

원 이하'로 상향조정(2023.2.시행)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②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을 '개인' 뿐만 아니라 영세 법인도 가능(2024.7.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고 밝힘.

□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 실적이 총 27회 수준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청구대리인 유·무에 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대리인 없는 사건의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3년 15.6%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2023년 기준 총 1만 6,781건의 청구사건 중 2,626건(15.6%)은 청구대리인 없이 납세자 본인이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향후 국선대리인 운영을 활성화한다면 납세자 권리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청구대리인 유·무〉

(단위: 건,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청구 건수	8,658	12,795	13,025	10,373	16,781
대리인 있는 청구	6,377	9,367	8,973	8,509	14,155
대리인 없는 청구	2,281	3,428	4,052	1,864	2,626
(비율)	26.3	26.8	31.1	18.0	15.6

(자료: 「2023 조세심판통계연보」 재구성)

- 한편, 조세심판원은 2025년도 예산안에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5-325) 사업을 신설하여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조세심판원 개원 50주년 기념사업에 1억원, 포탈 및 언론사를 통한 조세심판원 홍보사업에 9,200만원을 배정할 예정임.

〈2025년도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5-325)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안	추진 예정 사업	
192	① 포탈 및 언론사를 통한 조세심판원 홍보사업 - 홈페이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 전자심판, 우선처리제도 등 조세심판원 제도 홍보	92
	② 조세심판원 개원 50주년 기념사업 - 50주년 기념 백서 및 홍보 동영상 제작 -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기념행사 개최	100

(자료: 조세심판원)

- 현재 조세심판원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홍보를 위해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2024년 9월 까지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등 해당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소규모 홍보사업을 개별 사업별로 편성할 경우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신문·방

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 실시 등을 전제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세심판원은 홍보사업을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집행하고 조세심판원 홍보에 국선대리인제도 홍보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국선대리인제도는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액·영세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⁷⁾: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실적을 고려한 수당 편성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 억제를 통해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6,100만원(20.5%) 증가한 21억 2,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313	1,759	1,759	2,120	361	20.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963	1,215	1,215	1,376	161	13.3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192	273	273	273	-	0.0
국제협력	41	48	48	248	200	416.7
법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117	223	223	223	-	0.0

(자료: 국무조정실)

7) 세부사업: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2) 검토의견 : 집행실적이 부진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감액 필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함에도 내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은 「행정규제기본법」 8)에 따라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100만원(13.3%) 증가한 13억 7,600만원이 편성됨.

□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9)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에게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억 5백만원(38.7%) 증가한 3억 7,900만원의 수당을 반영하였음.

8)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9)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은 2024년부터 수당의 지급기준을 상향¹⁰⁾하여 집행 중이며, 2025년도의 예산 증액은 주로 상향된 지급기준 적용에 따른 것임.

〈2025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편성내역〉

(단위: 천원, %)

구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감	
		편성근거	금액(A)	편성근거	금액(B)	(B-A)	(B-A)/A
참석 수당	본회의	17명× <u>150천원</u> ×24회	61,200	17명× <u>200천원</u> ×24회	81,600	20,400	33.3
	분과위	16명× <u>150천원</u> ×18회	43,200	16명× <u>200천원</u> ×26회	83,200	40,000	92.6
안전 검토 수당	본회의	(1명× <u>500천원</u> +16명× <u>100천원</u>)×24회	50,400	(1명× <u>600천원</u> +16명× <u>100천원</u>)×24회	52,800	2,400	4.8
	분과위	(3명× <u>150천원</u> +13명× <u>80천원</u>)×26회	26,820	(2명× <u>200천원</u> +14명× <u>100천원</u>)×26회	46,800	19,980	74.5
	예비검토	17명× <u>100천원</u> ×54회	91,800	17명× <u>130천원</u> ×52회	114,920	23,120	25.2
합 계			273,420		379,320	105,900	38.7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 증액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사례금 등 지급기준 개정(안)」(2024.1.)

현행			➡	개정		
예심	10만원/회			예심	13만원/회	
본심사 * 본회의 분과위	참석	15만원/회		본심사 * 본회의 분과위	참석	20만원/회
	안전검토· 심사	위원장: 50만원/회 분과위원장: 15만원/회 위원: 8만원/회			안전검토· 심사	위원장: 60만원/회 분과위원장: 20만원/회 위원: 10만원/회

- 최근 3년(2021년~2023년) 간의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회의개최 수 또는 지급대상자¹¹⁾ 수가 편성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5% 미만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 예산 규모 산정 시 회의개최 수 등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임.
- 2024년에는 종전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인상된 단가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기준 집행률¹²⁾이 43.9% 수준임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액을 전액 반영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됨.

〈2021~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집행실적〉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참석수당	본회의	61,200	56,100	91.7	61,200	53,550	87.5	61,200	45,300	74.0	61,200	25,200	41.2
	분과위	28,800	900	3.1	28,800	0	0.0	28,800	12,750	44.3	43,200	8,600	19.9
안전검토수당	본회의	50,400	46,200	91.7	50,400	84,000	116.7	50,400	40,800	80.9	50,400	17,600	34.9
	분과위	17,040	550	3.2	17,040	0	0.0	17,040	21,440	125.8	26,820	23,150	86.3
	예비검토	114,920	89,637	78.0	114,920	66,170	57.6	114,920	73,270	63.8	91,800	45,470	49.5
합계		272,360	193,387	71.0	272,360	203,720	74.8	272,360	193,560	71.1	273,420	120,020	43.9

주: 2024년 9월말 기준(7월분까지 집행)

(자료: 국무조정실)

□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은 과거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1) 회의 참석자, 안전 검토자

12)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7월까지의 회의에 대한 수당을 집행하였음.

3. 규제혁신추진단 운영¹³⁾: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기한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전직공무원, 연구기관, 민간)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여 덩어리 규제¹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1,100만원(13.8%) 감소한 44억 4,300만원이 편성됨.

○ 이 사업은 ①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②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 ③ 발굴규제 검토·조정·개선 사업, ④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사업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 예산	추경(A)		(B-A)	(B-A)/A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4,960	5,154	5,154	4,443	△711	△13.8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3,952	4,282	4,282	3,821	△461	△10.8
덩어리 규제발굴	410	402	402	187	△215	△53.5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196	312	312	117	△195	△62.5
규제혁신추진단홍보	402	158	158	318	160	101.3

(자료: 국무조정실)

13) 세부사업: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14)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

2) 검토의견

(1)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의 감액 필요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이 내년 7월에 종료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에 편성된 사무실등 임차료 및 워크숍 개최 목적의 일반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중복·복합 규제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덩어리 규제의 집중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 (2022.8.1.)하였음.¹⁵⁾

○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2022년 8월에 설치된 3년 한시조직으로, 2024년 8월 기준 경제·사회분과 등 2개 분과별 전문위원(전직공무원 등 90명, 경제단체·연구기관 등 33명)과 지원국(부처 파견 인력 등 20명 내외) 등 총 14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됨.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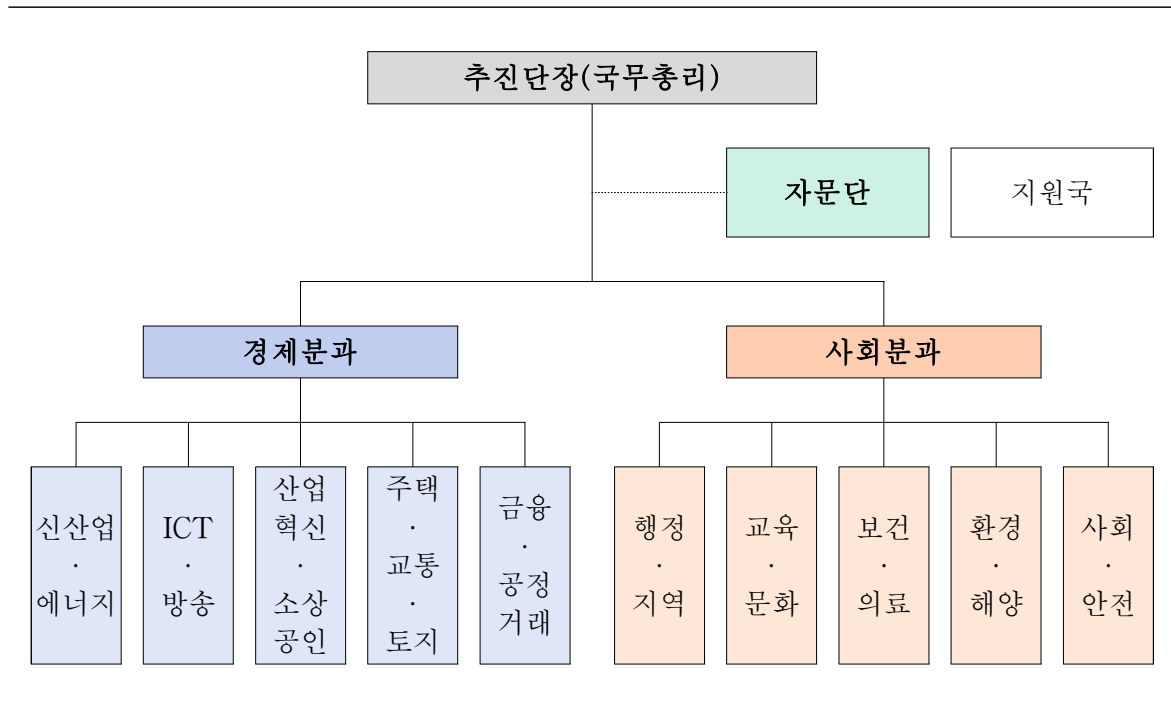
15) 경제·사회 2개 분과별 전문위원(전직공무원 75명, 경제단체·연구기관 34명)과 지원국(부처 파견 인력 등 20명 내외) 등 총 130여 명으로 구성됨.

16)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한 발굴·검토·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규제
2.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3.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분야의 규제
4.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규제혁신추진단 조직도〉



(자료: 국무조정실)

□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단원 임금 및 추진단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기한이 내년 7월말인 점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억 6,100만원(10.8%) 감소한 38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원으로 채용된 사람

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

나. 규제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국무총리가 파견을 요청하여 파견된 사람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다. 경제단체 및 사회단체

라. 그 밖에 추진단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025년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증감사유
			(B-A)	(B-A)/A	
○ 추진단원 임금(110-03목)	2,708	1,628	△1,080	△39.9	활동기간 12→7개월
○ 추진단 운영경비	319	285	△34	△10.7	
- 일반수용비(210-01목)	117	68	△49	△41.9	활동기간 12→7개월
- 공공요금및제제(210-02목)	96	56	△40	△41.7	활동기간 12→7개월
- 특근매식비(210-목)	19	11	△8	△42.1	활동기간 12→7개월
- 복리후생비(210-목)	3	2	△1	△33.3	활동기간 12→7개월
- 일반용역비(210-목)	40	120	80	200.0	워크숍 1회→3회
- 관리용역비(210-목)	34	22	△12	△35.3	활동기간 12→7개월
- 기타운영비(210-목)	10	6	△4	△40.0	활동기간 12→7개월
○ 사무실등 임차료(210-07목)	1,139	1,139	0	0.0	-
○ 업무추진비(240-02목)	24	14	△10	△41.7	활동기간 12→7개월
○ 고용부담금(250-02목)	2	696	694	34,700.0	퇴직금 소요 발생
○ 자산취득비(430-01목)	63	43	△20	△31.7	활동기간 12→7개월
○ 직무수행경비(250-02목)	27	16	△11	△40.7	활동기간 12→7개월
합 계	4,282	3,821	△461	△10.8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예산안 상세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규제혁신추진단의 워크숍 개최를 위해 편성된 일반용역비의는 워크숍 횟수의 증가(1회→3회)를 사유로 증액되었으며, 사무실 등 임차료의 경우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 먼저, 일반용역비의 경우 3회 워크숍 개최를 감안하여 2024년 1회

워크숍 예산액 4,000만원의 3배 수준인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이 내년 7월말에 종료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 수준인 4,000만원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2025년 임차료 예산은 2024년 규제혁신추진단의 사무실,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 예산 11억 3,8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 종료되는 시점에서 추가 임차소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차사무실 유지관리비 상승에 따른 증액소요¹⁷⁾를 감안하더라도 4억 6,000만원의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25년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임차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A)	2025년 실소요 예산(B)	과다편성액(B-A)
사무실	1,133,340 (94,445천 원×12개월)	1,135,660 (96,570천 원 ¹⁾ ×1.68×7개월)	67,5990 (96,570천 원×7개월)	459,670
냉온수기	2,880 (60천 원×4대×12개월)	1,680 (60천 원×4대×7개월)	1,680 (60천 원×4대×7개월)	-
공기청정기	2,400 (50천 원×4대×12개월)	1,400 (50천 원×4대×7개월)	1,400 (50천 원×4대×7개월)	-
합 계	1,138,620	1,138,620	679,070	459,670

주1) 2025년도 임차 사무실 유지관리비 상승(3%)에 따른 임차료 단가 상승

(자료: 국무조정실)

17) 국무조정실은 임차 사무실 유지관리비 상승(3%)에 따라 2025년도 임차료 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 따라서, 이 사업은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 종료시점을 감안하여 일반
용역비 8,000만원, 임차료 4억 6,000만원 등 총 5억 4,000만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활동 종료 예정인 규제혁신추진단의 홍보예산 감액조정 필요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종료 시점에 홍보비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홍보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사업은 규제혁신추진단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101.3%) 증가한 3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인포그래픽·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모바일 홍보, 포털 배너 광고,
국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의 경우 2024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2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일반용역비의 경우 2024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인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① 인포그래픽·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비용은 2배 이상의 단가(800만원→1,800만원)를 적용하였으며,
② 포털·모바일 홍보비용은 홍보 횟수(포털·모바일 총 1식→포털 1식,

모바일 4식) 및 단가(포털·모바일 총 6,000만원→포털 3,400만원, 모바일 7,000만원)를 대폭 확대하였고, ③ 홍보콘텐츠 제작의 경우 횟수를 2배로 확대하였음.

〈2025년도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108	218
일반수용비 (210-01목)	-인포그래픽·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8 ※ 8백만원×1식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11 ※ (18백만원×1식)/12×7
	-포털·모바일(네이버, 유튜브 등) 홍보: 60 ※ 60백만원×1식	-모바일(유튜브·인스타그램) 홍보: 163 ※ (70백만원×4식)/12×7
		-포털(네이버, 다음) 배너 광고: 20 ※ (34백만원×1식)/12×7
	-국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40 ※ 10백만원×4회	-국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23 ※ (10백만원×4회)/12×7
	50	100
일반용역비 (210-14목)	-홍보콘텐츠 제작: 50 ※ 50백만원×1식	-홍보콘텐츠 제작: 100 ※ 50백만원×2식
합 계	158	318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추진단 활동기간(2022.8.~2025.7.) 동안의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하여 덩어리 규제 개선사항을 전파·확산 함으로써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 개선사항을 국민 들이 인지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비를 증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규제개혁추진단의 홍보비 증액편성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규제혁신추진단은 매년 덩어리 규제개선 사례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규제혁신추진단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¹⁸⁾이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내년도 예산안 증액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규제혁신단은 2024년 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을 통하여 10월말 기준 총 7편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 중이나, 조회수가 1,000건을 넘는 게시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이 규제혁신의 내용을 인지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도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8) 2022~2024년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본예산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2022	-	-	-	228	228	-	-	-
2023	358	49	-	-	407	402	112.3	98.8
2024	158	-	-	-	158	5	3.2	3.2

주: 2024년 7월말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영상물 조회수 현황〉

(단위: 건)

게시일	제목	구분	채널별 조회수		
			추진단	총리실TV	합계
'24.1.2	투덜이가 꼽은 우수규제혁신 5탄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2-1	Full	33	252	729
		Shorts	62	382	
'24.8.27	충청북도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Full	-	-	389
		Shorts	59	330	
'24.9.4	규제혁신추진단 2주년 성과와 계획	Full	716	-	716
		Shorts	-	-	
'24.9.23	지방소멸 위기대응 은퇴자(베이비부머) 지원 규제개선	Full	138	-	138
		Shorts	-	-	
'24.9.19	국가대표 투덜이 -EP.4 인증규제편-	Full	117	-	117
		Shorts	-	-	
'24.10.28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Full	-	-	104
		Shorts	104	-	
'24.10.31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Full	351	-	351
		Shorts	-	-	

주1 유튜브 조회수는 2024년 11월 4일 16시 기준

주2 게시일은 추진단 채널과 총리실TV 채널 게시일 중 우선하는 날로 작성

(자료: 국무조정실 자료 및 YouTube(추진단·총리실TV 채널) 조회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둘째,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기한이 내년 7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증액 편성된 홍보 예산의 집행가능성 및 관련 부서의 부재에 따른 사업관리 부실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규제혁신추진단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4월~5월에 입찰공고가 개시되어 6월에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으며, 납기일은 11월말 또는 12월말이었음.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영상물 제작 계약내역〉

연 도	계약명	공 고 일	개 찰 일	계 약 일	납 기 일
2023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영상물 제작	2023.05.12.	2023.05.16.	2023.06.13.	2023.12.31.
2024	규제혁신추진단 홍보영상물 제작	2024.04.15.	2024.04.30.	2024.06.05.	2024.11.30.

(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이를 고려할 때,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의 수립, 입찰공고, 계약체결, 홍보물 제작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 사업의 특성상 규제혁신추진단 존속기한까지 완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규제혁신추진단이 해산 예정인 7월말 이후에는 사업의 관리부서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규제혁신추진단 활동의 이해도 부족, 해산된 조직의 업무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등으로 사업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홍보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종합할 때,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종료 시점에서 홍보비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 시 홍보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¹⁹: 기관역량진단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 추진체계 공고화, 체계적·실효적인 ODA 전략·정책 마련 및 유·무상 연계 등 사업 심사·조정, 유·무상 및 양·다자 사업 연계, 평가 등을 통해 ODA 통합·조정 강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억 2,400만원(81.6%)이 증가한 53억 9,600만원임.

- 주요 증액 사업은 ‘ODA 통합정보포털 고도화’, ‘ODA협업 연구용역’ 등이며, 각각 19억 7,400만원, 2억 7,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인 “ODA 심사·평가 및 현안연구”는 내실있는 ODA 추진을 위해 ODA 전략수립, 정책 및 사업을 심사·평가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3,000만원(19.2%)이 증가한 14억 2,500만원임.

19) 세부사업: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7035-306)

〈2025회계연도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2,741	2,972	2,972	5,396	2,424	81.6
- ODA 심사·평가 및 현안연구	1,081	1,195	1,195	1,425	230	19.2

(자료: 국무조정실)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조정기관-주관기관-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됨.

-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정책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이며, ODA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은 ‘시행기관’이라고 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41개 시행기관(지방자치단체 7개 포함) 관련 6조 7,972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예산 6조 2,629억원 대비 5,343억원(8.5%) 증가한 수치임.²⁰⁾

20)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4. 6. 26.) 의결안건(제50-1호),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 검토의견: 기관역량진단을 예산과 연계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

국무조정실은 기관역량진단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기관역량진단 결과를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역량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²¹⁾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ODA 총괄·조정기관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관련 ODA사업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다음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에 고려되어야 하며,²²⁾ 종합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에 추진되는 사업 개요 등과 함께 시행기관, 사업명, 해당연도 예산요구액 등이 반영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함.²³⁾

- 또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은 추진과제로서 성과관리 강화 및 평가 실효성 제고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사업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2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심사·의결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2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사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과 연계’하도록 하였음.²⁴⁾

- 위원회는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2년도부터 기관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이 역량진단은 중위 규모(10억원) 이상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되는데,²⁵⁾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기관역량진단 및 컨설팅을 위해 집행한 용역비는 총 5억 2,745만원임.

〈기관역량진단 관련 일반연구비(260-01) 계약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구용역 주제	계약금액
2021년	ODA시행기관에 대한 역량진단 모델 개발 시행기관 성과관리 역량 강화 지원	178,181
2022년	ODA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	124,727
2023년	ODA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	133,636
2024년9월	ODA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 (사업 진행 중)	90,909
합 계		527,453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역량진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두가지 사항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첫째, 기관역량진단 결과와 시행기관 예산요구액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24)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6-1호), 2021.1.20., p.22

25) 2022년도에는 13개 기관, 2023년도에는 12개 기관에 대하여 기관역량진단을 실시하였음.

2022년도 기관역량진단(13개 기관)	2023년도 기관역량진단(12개 기관)
산업부, 농진청, 과기부, 국토부, 교육부, 해수부, 복지부, 기상청, 문체부, 관세청, 고용부, 국가유산청, 법무부	기재부(EDCF), 외교부(KOICA), 국조실, 산림청, 경찰청,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여가부, 특허청, 통계청, 식약처

- 2022년도에 실시된 기관역량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되었는데, 성과관리역량²⁶⁾과 자체평가역량²⁷⁾을 진단하여 A등급 3개기관, B등급 7개기관, C등급 3개기관으로 평가하였음.
- 그런데, 2022년도에 실시된 기관역량진단 결과와 2024년도 및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 상의 예산요구액²⁸⁾을 비교해보면, 기관역량진단에 따른 평가 결과가 시행기관별 예산요구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2022년도 기관역량진단 결과 및 2024년·2025년 예산요구액 증감>

기관명	등급	2023예산액 대비 2024예산요구액 증감	2024예산액 대비 2025예산요구액 증감
산업통상자원부	A	112.5%	47.8%
○○○	A	21.0%	△11.1%
○○○	A	12.2%	△16.0%
○○○	B	△5.4%	33.4%
○○○	B	20.1%	23.1%
○○○	B	83.0%	22.6%
○○○	B	11.1%	36.8%
○○○	B	△0.9%	△1.8%
○○○	B	△11.6%	15.6%
○○○	B	42.5%	△12.8%
○○○	C	△0.8%	7.9%
○○○	C	315.7%	18.8%
○○○	C	4.5	2.8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26) 소항목: 사업기획/ 사업관리/ 사후관리 노력

27) 소항목: 자체평가 수행기반 / 자체평가 관리 /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28) 국회에 대한 예산 요구안을 말함. 국회에서 이 예산 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면, 위원회는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하게 됨.

- 2022년도 진단 결과,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시행기관 중 하나는 2024년도 예산요구 시에 전년 대비 315.7% 증액 요구하였고, 2025년도에도 전년 대비 18.8%를 증액 요구하였음.
 - 반면, B등급을 받은 시행기관 중 하나는 2024년도와 2025년도 예산요구액 모두 전년 대비 감액 조정되는 등 기관역량진단 결과와 시행기관의 사업예산 간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아니함.
- 2024년 실시된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²⁹⁾에서도 “기관역량진단 결과 등을 참고하여 ODA 재원 배분 시에 높은 역량을 갖춘 시행기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는데,³⁰⁾ 이는 양적으로 확대된 ODA 예산³¹⁾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로 이해됨.
- 둘째, 기관역량진단을 위한 진단지표를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감사원의 2023년 8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의 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중단 통보를 받은 ODA 사업임에도 예산을 집행해 관련 기자재를 구입하는 등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협의의사록³²⁾ 체결 및 실질적인 사업 착수 이전에 미리 구입한 기자재를 사업 중단 등으

29)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은 매년 4 ~ 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회원국 상호 검토를 진행함.

30) 외교부 공동보도자료, 2024.5.21.

3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기간 동안, (2021년) 3.71조원 → (2022년) 3.94조원 → (2023년) 4.78조원 → (2024년) 6.26조원 → (2025년요구액) 6.79조원으로 ODA 규모 확대

32) 수원국과 ODA사업의 목적 및 기간, 대상분야, 공여국측 지원사항, 협력대상국측 부담사항 등 협력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을 정리하고 서명한 문서

로 인해 창고에 장기간 방치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 이로 인하여 관리·감독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수원국과의 협의의사록 체결 전에 보조금을 관련 기관에 전액 교부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제도개선 요구를 받았음.

-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 ODA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의 2022년도 기관역량진단 결과에서는 오히려 가장 높은 A 등급을 받아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음.

- 이는 현재의 기관역량진단이 시행기관의 개별 ODA 사업 집행능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ODA 사업 관련 인적·구조적 자원 구비 여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기 때문으로 보임.

- 기관역량진단 지표를 살펴보면, 전략 부합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사업 관리 지침 보유 여부, 자체평가³³⁾의 충실성 등으로 구성되고, 시행기관이 실시하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은 보이지 않음.

33) ODA 사업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기관역량진단의 진단지표〉

2022년·2023년 진단지표	2024년 진단지표
▣ 기관 사업의 전략 부합성 ▣ 계획 수립의 충실성 ▣ 수행체계의 명확성 ▣ 사업관리의 체계성 ▣ 사업 간의 연계 및 협업 노력 ▣ 사후관리 이행 노력 ▣ 사업성과 유지 노력	▣ 수원국 개발전략 고려 여부 ▣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여부 ▣ 성과목표와 지표의 적절성 ▣ 전략 부합성 검토 ▣ 전담조직 등 업무 분담의 명확성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지침 보유 ▣ 절차에 따른 충실한 사업 이행 ▣ 사업진행 상황의 분기별 점검·보고 ▣ 사업간 연계 실적 ▣ 해외 공관과 수원국과의 협업 ▣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자체평가 제도 구비 실태 ▣ 자체평가 계획의 명확성 ▣ 자체평가 과정의 신뢰성 ▣ 자체평가 결과의 충실성 ▣ 자체평가 품질 개선 노력 ▣ 자체평가 개선과제 도출의 적극성 ▣ 자체평가 결과 환류의 충실성	▣ 자체평가 지침 및 매뉴얼 구비 여부 ▣ 자체평가 외부전문가 등 참여 여부 ▣ 자체평가 계획의 명확성 ▣ 자체평가 과제선정의 대표성과 적극성 ▣ 자체평가 보고서 품질 ▣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공개 수준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국무조정실은 향후 시행기관의 개별 ODA사업 집행능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역량진단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기관역량진단 결과를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역량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5.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³⁴⁾: 청년친화도시 사업 지원액 감액조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은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5,000만원(△21.7%) 감액된 70억 3,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7,323	8,984	7,034	△1,950	△21.7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운영	219	219	-	0.0
청년참여 확대	1,274	1,205	△69	△5.4
청년의 날 기념 및 주간행사 개최	530	500	△30	△5.7
청년정책 연구사업	100	300	200	200.0
청년정책 홍보	682	642	△40	△5.9
시행계획 점검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300	250	△50	△16.7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2,270	2,770	500	22.0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198	1,148	950	479.8
계	8,984	7,034	△1,950	△21.7

(자료: 국무조정실)

34) 세부사업: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

2) 검토의견: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1차년도 지자체 보조금 조정 필요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사업은 청년친화도시가 연말에 지정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계획 및 소요액이 내년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사업시행 첫 해임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및 자치단체보조사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예산안 편성지침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1년차 보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사업은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 성과관리 방안 등 연구 등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5,000만원(479.8%) 증액된 1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2023년 3월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국무총리의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³⁵⁾되었음.

- 35)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
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무조정실은 매년 3개의 지자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할 계획으로, 지정기간은 5년이며 그중 최초 2년간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자체당 5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연도별로 국비 2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보조율 50%를 적용하여 국비에 대응한 지방비를 2억 5,000만원 이상 매칭하고자 함.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는 3개의 지자체에 대한 2억 5,000만원의 지원액이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로 7억 5,000만원 반영되었음.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11억 4,800만원

- ① 청년친화도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7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 3개 지역)
- ②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용역: 일반용역비(210-14목) 1억 5,000만원
- ③ 청년친화도시 성과관리 방안 등 연구: 일반연구비(260-01목) 2억원
- ④ 운영비용: 일반수용비(210-01목) 3,300만원, 국내여비(220-01목) 500만원, 사업추진비(240-01목) 1,000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 해당 보조금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한 지역 맞춤형 청년친화 사업에 집행될 계획인데,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는 2024년 연말에나 지정될 예정³⁶⁾으로 지자체별 사업 내용은 차년도 1분기

-
-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 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이후에 구체화될 것으로 설명하여 2024년 10월 기준 지자체당 보조금 2억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사업 구성요소³⁷⁾, 사업비 운용방식 및 사업 성과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 운영지침을 연말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나,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자체를 알 수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비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지자체가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 시(10월말 기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내년이 사업시행 첫 해임을 감안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르면 내년도 2분기 중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6) 2024년 8월 지정계획 공고 후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정평가 후 12월 중 청년친화도시가 지정될 예정임.

37) <청년친화도시 사업 구성요소(안)>

구성요소	세부내용
브랜드化	○ 청년정책 분야별 연계를 통해 지역을 대표할만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내 청년 정책을 종합적·구조화하여 차별화된 사업모델 제시
청년선호	○ 청년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콘텐츠와 접목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복지·문화 등과 연계된 프로젝트 수립
청년지지	○ 청년 일자리 및 창업 기회 확대, 청년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시스템 마련
지역확산	○ 청년들의 적극적 참여, 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확대

(자료: 국무조정실)

- 참고로, 자치단체보조사업에 대하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예산 계상 신청을 한 사업에 한하여 국고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부지확보·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며, 사업 추진단계,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공직복무 관리³⁸⁾: 기본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이관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공직복무 관리” 사업은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지휘·통할을 보좌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행정부 내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00만원 (12.2%) 증가한 9억 7,400만원임.

〈2025년도 공직복무 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직복무 관리	842	868	868	974	106	12.2

(자료: 국무조정실)

2) 검토의견: 기본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이관 필요

국무조정실은 공직복무 관리 목적의 특수활동비를 기본경비에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본경비에서 공직복무 관리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2년차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3년초에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이하 “점검단”) 인력을 36명에서 47명으로 11명 증원(+32%)하였음.

38) 세부사업: 공직복무 관리(7036-303)

○ 구체적으로, 2023년 1~2월 법무부 5명, 경찰청 4명, 국세청 2명 등 총 11명의 직원을 비별도 정원으로 증원하였으며, 2023년 2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11명 중 5명을 별도정원으로 변경하였음.

□ 한편, 2024년 예산안에는 점검단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여 업무용 휴대전화 이용요금,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여비, 사업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음.

○ 이 중, 특정업무경비(250-03목)³⁹⁾는 인력 11인 증원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⁴⁰⁾씩 연간 총 3,960만원의 증액 소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점검단 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증액예산	내용	비고
공공요금 및 제세	11,106	업무용 휴대전화	35대→46대
임차료	52,079	공직복무 점검활동 차량 임차	15대→26대
유류비	20,815	임차 차량 유류비	15대→26대
국내여비	57,000	공직복무 점검활동 여비	30명→41명
사업추진비	11,000	공직복무 점검활동 업무추진비	80회→105회
특정업무경비	39,600	조사 및 점검 활동 소요경비	37명→48명
합 계	152,000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2024년 당시 특정업무경비 증액 예산을 이 사업이 아닌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⁴¹⁾에 공직복무 관리 활동비라는 명목

39)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40)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하는 특정업무경비 월 정액 지급 한도금액

41) 세부사업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7011-200)

으로 반영하였는바, 이는 사업 집행 목적의 경비를 사업 예산이 아닌 기본경비에 잘못 편성한 것이며, 이에 2025년도 예산안에는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특정업무경비를 이 사업으로 이관함으로써 2024년도 예산 편성의 오류를 시정하였음.

□ 다만, 국무조정실은 특정업무경비를 기본경비에 잘못 편성했던 2024년의 사례와 유사하게 공직복무 관리 목적의 특수활동비(230-00목)를 매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⁴²⁾에 편성하고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기본경비의 적용대상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 명시⁴³⁾하고 있으나, 해당 특수활동비는 공직복무 관리관실의 공직비위 정보수집과 조사 및 관련 제보자 접촉 등 공직 기강 확립업무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기

42) 세부사업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

43)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 기본경비

1. 적용대상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

① 기본행정경비

-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직책수행경비, 과운영비, 급식비 등 기준성 경비
- 공무원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경비
- 맞춤형 복지 시행에 따른 경비

②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 전산소모품, 임차료, 회선사용료 등 전산장비의 유지운영
- PC 교체 등 소규모 전산경비

③ 사회복지무요원 운영비

- 사회복지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위해 집행부서의 사업비가 아닌 회계부서 관할의 기본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현재에도 「국고금 관리법」에 근거하여 회계부서의 지출관이 사업부서의 출납공무원에게 특수활동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활동비를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⁴⁴⁾

□ 따라서,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1억 7,200 만원을 공직복무 관리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특수활동비의 이관 관련 수정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안	조정	
		조정액	조정내역
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	6,540	△172	·특수활동비 이관에 따른 감액
공직복무 관리(7036-303)	974	172	·특수활동비 이관에 따른 증액

44)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7.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⁴⁵⁾: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 및 포털 광고비의 감액조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은 2025년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참여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1억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운영	-	-	2,129	2,129	순증
- 위원회·추진단 운영경비	-	-	915	915	순증
- 국민참여 기념사업	-	-	712	712	순증
- 기념사업 홍보	-	-	432	432	순증
- 기념사업 성과관리	-	-	70	70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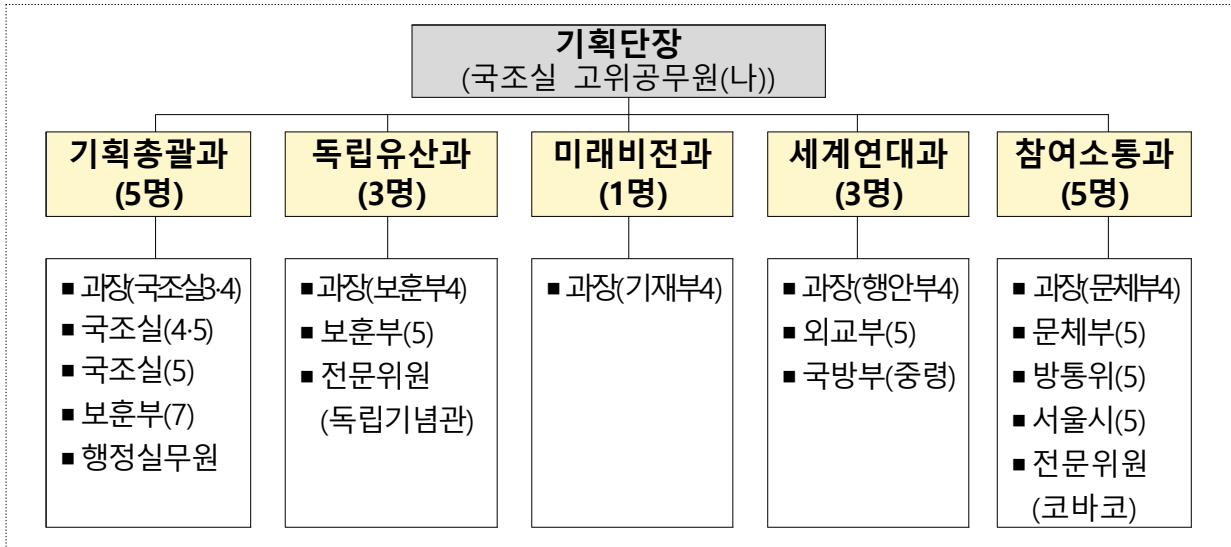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

- 2024년 7월 23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국무조정실은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음.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연내 구성할 계획이며,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국무

45) 세부사업: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7036-315)

조정실·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조직도〉



주: 2024년 9월 20일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위원회·추진단 운영경비 9억 1,500만원, 국민참여 기념사업 7억 1,200만원, 기념사업 홍보비 4억 3,200만원, 기념사업 성과관리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 검토의견

(1)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의 집행가능성 및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은 10월말 기준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민간의 참여 정도가 편성 근거로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가능성 및 예산의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내역사업인 ‘국민참여 기념사업’은 광복 80년 기념사업 기획·추진 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포상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에 3억원, ‘국민의 소소한 아이디어 실현 공모’에 3억원, ‘광복 80년 서포터즈 운영사업’에 1억 1,200만원 등 총 7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민참여 기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①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 3억원
- 일반수용비(210-01목): 2억 8,000만원 = 80팀 × 3.5백만원
 - 임차료(210-07목): 행사장(발표식) 2,000만원
- ② 국민의 소소한 아이디어 실현 공모 3억원
- 일반수용비(210-01목): 3억원 = 위원회 기념사업(50개)×사업당 12개×아이디어 구현비 50만원
- ③ 광복 80년 서포터즈 운영사업 1억 1,200만원
- 일반수용비(210-01목) 1억 1,200만원 = 80명×SNS 활동비 등 20만원×7개월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광복 80년 기업사업이 모든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민간 사업을 지원·독려하는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은 10월말 기준까지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음.

- 당초 정부안 편성 당시 이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목)는 국민이 기획·활동한 광복 80년 기념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해 편성되었는데, 대상 8팀에 대하여 각각 2,000만원을, 장려상 등 80팀에 대하여 100만원의 시상금을 전제로 편성하였음.⁴⁶⁾
- 한편, 예산안 제출 이후에는 이 사업의 계획을 국민이 직접 기획한 사업에 사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나, 실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10월말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이후 다시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또한,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은 80팀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참여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이 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민간의 참여 정도가 편성 근거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6) 2억 8,000만원 = 대상 1억 6,000만원(2,000만원×8팀) + 장려상 등 8,000만원(100만원×80팀)

(2) 광복 80년 포털 광고비의 중복편성 고려한 감액 필요

기념사업 홍보 사업 중 ‘광복 80년 광고·홍보’를 위해 편성된 포털 광고비(2억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광복 80주년 기념 광고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감액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기념사업 홍보’는 광복 80년 광고·홍보를 위한 포털 광고비 2억원, 슬로건·로고 디자인 등 광복 80년 디자인 사업에 1억 3,200만원,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1억원으로 총 4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그중 포털 광고비로 편성된 ‘광복 80년 광고·홍보’ 예산 2억원은 광복 80년 기념사업 전반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임.

〈기념사업 홍보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
|---|
| ① 광복 80년 광고·홍보: 포털 광고비 2억원 |
| - 2,500만원×4개 포털×2월 = 2억원 |
| ② 광복 80년 디자인 사업 1억 3,200만원 |
| - 슬로건·로고 디자인 1억원 + 현수막·백드롭 등 3,200만원 |
| ③ 홈페이지 구축·운영 1억원 |
| - 홈페이지에 IT기술(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챗봇, AI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연계하기 위한 개편·디자인 |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매년 방송, 온라인, 옥외광고, 인쇄 등의 매체를 활용한 정부의 주요정책 광고비 및 정책광고 운영비 등이 편성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에 광복 80주년 기념 광고를 위해 1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활용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복 80주년 관련 광고를 추진할 계획임.⁴⁷⁾

□ 그럼에도 국무조정실에서 광복 80년 광고를 위한 포털 광고비로 2억원이 반영된 것은 동일한 사항에 대한 광고비가 부처 간 중복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⁴⁸⁾하므로 보다 효율적·체계적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실시 등을 전제로 절감편성하도록 규정⁴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 소관 기념사업 홍보 예산 2억원을 감액할 필요 있음.

47)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사업코드 1932-301)

<20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국가 주요정책 광고 : 22,015백만원(△1,633, △6.9%)
 - 정부 4년 차 개혁추진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 중점 홍보, 광복 80주년 등 국가 중요행사 홍보를 통해 정책성과 등에 대한 국민 체감도상승과 인식 제고
 - 주요정책 광고 16,048백만원(△2,848, △15.1%)
 - ▲ 방 송 : 6,048백만원
 - ▲ 온라인 : 6,800백만원
 - ▲ 옥 외 : 2,300백만원
 - ▲ 인 쇄 : 900백만원
 - 국가 기본정책 장기 캠페인 4,700백만원(전년동)
 - **광복 80주년 기념 광고 1,215백만원(순증)**
 - 정책광고 운영 등 52백만원(전년동)
- 정책간행물 발간 : 4,833백만원(전년동)
 -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책간행물(정기, 수시) 발간, 디지털 확산
 - 정책간행물 발간 4,283백만원(전년동)
 - ▲ 정기 및 수시간행물 발간 4,283백만원
 - 정책간행물 디지털 확산 550백만원(전년동)
 -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확산 350백만원, ▲ 누리집 운영 및 개선 20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48) 「정부조직법」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9)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17.

제2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1. 개 요

1. 2025년도 예산안 규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출연연구기관의 2025년도 출연금예산안 규모는 5,459억 5,100만원으로 2024년도의 5,361억 9,200만원에 비해 97억 5,900만원(1.8%)이 증가하였음.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	536,192	545,951	9,759	1.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비목별 예산안 내역

〈비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536,192	545,951	9,759	1.8
기본사업비	440,382	455,058	14,676	3.3
○ 인건비	331,072	342,567	11,495	3.5
○ 경상운영비	54,467	56,150	1,683	3.1
○ 기관고유사업비	54,843	56,341	1,498	2.7
특수사업비	98,296	93,948	△4,348	△4.4
○ 일반사업비	90,574	92,632	2,058	2.3
○ 시설비	7,722	1,316	△6,406	△83.0
자체수입 출연금 대체	△2,486	△3,055	△569	22.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기본사업비는 4,550억 58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인 146억 7,600만원이 증가함.

○ 인건비: 전년대비 114억 9,500만원(3.5%) 증가한 3,425억 6,700만원

- 2025년도 처우개선분(3.0%) 반영: 100억원

- 2024년도 신규인력 자연증가분(12명): 3억원

- 2025년도 신규인력(17명): 4억원

- 2022년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4명): △2억원

○ 경상운영비: 전년대비 16억 8,300만원(3.1%) 증가한 561억 5,000만원

- 공공부문 비용절감을 위한 경상운영비 5% 감액(공통): △8억원

- 임차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14개 기관*): 8억원

* 연구회, 과학, 대외, 산업, 통일, 교통, 노동, 보건, 육아, 여성, 직능원, 청소년, 형사, 환경

- 재산세 증감분(국토, 농촌, 대학원): △4억원

- 사무실 추가 임차(대학원, 환경): 7억원

- 노후시설 보수, 안전관리 등 기관별 소요 반영(15개 기관*): 14억원

* 연구회, 국토, 대외, 에너지, 정보, KDI, 교육, 평가원, 농촌, 법제, 여성, 조세, 청소년, 해양, 행정

○ 기관고유사업비: 전년대비 14억 9,800만원(2.7%) 증가한 563억 4,100만원

- 클라우드 이용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공통): 8억원

- 연구기관 기본연구사업비 증액(법제, 청소년): 4억원

- 학회 등과의 연구네트워크 활성화(공통): 3억원

□ 특수사업비는 939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인 43억 4,800만원이 감소함.

○ 일반사업비: 전년대비 20억 5,800만원(2.3%) 증가한 926억 3,200만원

- 종료·감액 △197억(167건), 신규·증액 218억(82건): 20억원

○ 시설비: 전년대비 64억 600만원(△83.0%) 감소한 13억 1,600만원

- 노후장비 교체, 시설보수 등 공사비 지원(3개 기관*): 13억원

* 에너지, 대학원, 행정

-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대학원): △58억원

□ 자체수입 출연금 대체는 30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6,900만원(22.9%)이 증가함.

○ 청사이전 계획 순연에 따른 청사이전비, 보증금 등(통일, 조세) : △31억원

3. 예산안 내역

〈기관별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556,704	536,192	545,951	9,759	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9,291	18,777	22,122	3,345	17.8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472	16,914	17,123	209	1.2
2. 국토연구원	21,783	22,185	24,387	2,202	9.9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1,474	29,816	31,340	1,524	5.1
4. 산업연구원	22,408	24,965	23,973	△992	△4.0
5. 에너지경제연구원	11,930	11,631	12,374	743	6.4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597	15,217	15,665	448	2.9
7. 통일연구원	10,298	10,926	9,267	△1,659	△15.2
8. 한국개발연구원	69,229	71,714	68,823	△2,891	△4.0
- 본원	44,520	46,106	47,416	1,310	2.8
- 국제정책대학원	24,709	25,608	21,407	△4,201	△16.4
9. 한국교육개발원	20,677	22,219	22,079	△140	△0.6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809	25,327	26,154	827	3.3
11. 한국교통연구원	19,110	18,858	18,515	△343	△1.8
12. 한국노동연구원	16,286	15,849	16,244	395	2.5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566	17,285	17,071	△214	△1.2
14. 한국법제연구원	14,064	13,874	15,154	1,280	9.2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474	32,006	32,289	283	0.9
- 본원	24,484	23,871	23,786	△85	△0.4
- 육아정책연구소	7,990	8,135	8,503	368	4.5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039	16,087	16,933	846	5.3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7,982	37,818	38,278	460	1.2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3,445	22,543	23,586	1,043	4.6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365	9,959	10,350	391	3.9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663	21,305	21,103	△202	△0.9
21. 한국행정연구원	14,556	13,906	14,292	386	2.8
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814	13,379	13,688	309	2.3
23. 한국환경연구원	23,380	21,745	22,900	1,155	5.3
24. 건축공간연구원	11,992	11,887	12,241	354	3.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주요 증감 내역(3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운영 6억 9,000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 전략기술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 3억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TI 및 동북아 낙후지역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네트워크 사업 3억원
- 산업연구원: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방안 연구 3억원
인구감소 시대의 미래 산업구조 전환 및 대응연구 3억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열펌프(GHP) 시설 교체 6억 8,800만원
- 통일연구원: 북한총람 3억 7,000만원
미 新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과 동북아 정세: 전망과 대책 3억 7,000만원
- 한국개발연구원: 개발협력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OECD 공동연구 5억 5,000만원
- KDI국제정책대학원: 노후 기숙사 누수 방지공사 4억 9,300만원

- 한국교육개발원: 수요맞춤 고등교육 성과정보 관리체계 구축 연구 3억원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 3대 혁신전략 지원사업 3억 5,100만원
-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이민자 수요 및 영향 평가 연구 3억 5,000만원
-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 7억 5,000만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3억 3,000만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 공급망 북중미 협력체계 구축사업 3억 2,600만원
- 건축공간연구원: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건축 통계 개발 및 정보 활용 사업 3억원

<주요 증액사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 29억 7,500만원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운영 3억 3,800만원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17억 7,000만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사업 3억원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책시계열사업 7억원
- KDI국제정책대학원: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 5억 6,800만원
-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연구 3억 7,000만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산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 3억 5,000만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미래물류기술 고도화 연구 3억 5,000만원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선진화 연구사업 3억 2,300만원

<주요 감액·완료사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연구·행정효율화 추진 △3억 6,800만원
출연연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3억 8,200만원
- 산업연구원: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구축사업 △6억 3,200만원
한-인도네시아 산업혁신 연구협력사업 △15억 2,500만원
- 한국개발연구원: 국가비전 및 전략 제시 사업 △4억 5,600만원
열린혁신 플랫폼을 통한 정책형성 방안 △3억 5,100만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 △5억 1,500만원
- KDI국제정책대학원: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 △57억 5,500만원
기숙사 노후시설 및 안전설비 개선 △3억원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진단·평가 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11억 8,000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12억 4,700만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국제물류 공급사슬 관리 정책 연구 △5억 7,700만원

II. 검토의견

1. 연구기관 공통: 수시연구사업 활성화 필요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을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를 의미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은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수시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⁵⁰⁾. 2025년 각 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11.05%를 수시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됨.⁵¹⁾
- 그러나 수시연구사업비가 편성된 25개 연구기관 중 15개 연구기관의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사업비 예산이 10%대에 머무르고, 조세재정연구원의 경우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사업비 예산이 4.73%에 머무르는 등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의 수시연구사업비 편성 기준은 수시연구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50)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수시연구과제 선정) ① 연구기관은 정책연구의 시의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수시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이월 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수시연구과제비를 변경할 수 있다.

51) 2024년 기본연구사업비 총액 대비 수시연구사업비는 평균 9.07%였음.

보다는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에 있어 사실상의 하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2025년도 연구기관별 수시연구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수시연구과제 예산(A)	기본연구사업비 예산(B)	비율(A/B)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6	596	19.46
국토연구원	100	992	1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3	1329	10.01
산업연구원	180	1800	10.00
에너지경제연구원	80	792	10.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	186	10.22
통일연구원	100	580	17.24
한국개발연구원(KDI)	68	680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	-	-
한국교육개발원	165	1298	12.7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9	1587	10.02
한국교통연구원	72	414	17.39
한국노동연구원	116	780	14.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7	1168	10.02
한국법제연구원	109	999	10.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8	1166	10.12
육아정책연구소	123	764	16.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5	741	10.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5	1375	4.7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01	1003	10.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0	530	11.3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1	733	13.78
한국행정연구원	93	823	11.3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62	613	10.11
한국환경연구원	125	1250	10.00
건축공간연구원	65	620	10.48
합 계	2,522	22,819	11.05

□ 또한, 각 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에 대한 2023년 결산을 통해서는 수시연구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음. 2023년 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 예산현액은 2023년 수시연구사업 예산액 32억 4,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 18억 1,000만 원을 더한 50억 5,300만원이며, 이 중 77%에 해당하는 38억 8,900만원은 연내 집행되었으나, 23%에 해당하는 11억 6,500만원은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2024년도로 이월되었음.

〈2023년 수시연구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23년				예산현액대비	예산현액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연구회	-	-	-	-	-	-
과학	110	152	115	37	76	24
국토	125	216	205	11	95	5
대외	142	358	289	69	81	19
산업	271	407	244	163	60	40
에너지	155	207	152	55	73	27
정보통신	29	29	25	4	86	13
통일	85	97	85	12	88	12
KDI	71	92	20	72	22	78
KDI대학원	-	-	-	-	-	-
교육	239	301	245	56	81	18
평가원	245	679	318	361	47	53
교통	51	84	84	0	100	0
노동	96	229	165	65	72	28
농촌	147	278	224	54	81	19
법제	101	171	142	29	83	17
보건	123	177	147	30	83	17
육아	124	184	176	8	96	4
여성	113	183	138	45	75	25
조세	103	83	64	19	77	23

직업	169	238	238	0	100	0
청소년	69	75	61	14	81	19
해양	154	154	154	0	100	0
행정	124	188	176	12	94	6
형사·법무	134	149	122	27	82	18
환경	195	230	217	13	94	6
건축	68	92	83	9	90	10
합 계	3,243	5,053	3,889	1,165	77	23

□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년 수시연구사업의 예산현액 9,200만원 중 7,200만원(78%)를 이월하여 수시연구사업 수행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도에는 1억 4,500만원의 예산액 중 5,600만원을 기본연구사업비 내 계획된 다른 연구과제로 옮겨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현액 8,900만원 중 2024년 10월까지 1,374만원(14.4%)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수시연구사업의 집행 부진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수시연구사업 예산 규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국회 예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책현안에 대응하는 시의성 높은 정책연구의 가능성을 저해함.

□ 따라서 각 연구기관은 수시연구과제 발굴·수행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수시 연구수행 요청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체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통해 수시연구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⁵²⁾

52)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수시연구과제 선정) ② 수시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선정·수행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수시 연구수행 요청이 있는 경우

2. 연구기관 공통: 협동연구 추진체계 개선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협동연구사업은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학회 등의 국내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 또는 세미나 등 국내외 학술행사로써 연구기관 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기획하는 사업임⁵³⁾.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⁵⁴⁾는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을 연구회의 사업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협동연구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와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로 구분됨.

□ 2025년도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은 9개 기관에서 16개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총 26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한편, 2025년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은 17개 연구과제 수

2.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수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경우

3. 연구기관이 정책현안에 대한 시급한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각 연구기관의 과제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경우

4. 기타 연구기관이 수시연구과제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3)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연구사업”이라 함은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학회 등의 국내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 또는 세미나 등 국내외 학술행사로써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기획하는 것을 말한다.

54)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행을 위해 총 4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구기관 및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9,500	10,200	6,930	1,500	4,475
과제수	69	50	32	16	17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5,356	6,216	4,445	4,170	2,694
과제수	69	50	32	16	16
기관수	13	13	11	12	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를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이 연구회의 공모를 통해 수행하도록 정하고,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23조의2는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회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정함.

□ 그런데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업수행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협동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 첫째,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관하여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은 연구회의 공모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회에 따르면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관한 연구회 공모는 최근 5년간 한차례도 수행된 바 없음. 또한 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대하여 예산 심의 및 성과관리만을 수행할 뿐 과제 및 협력기관에 관한 공모는 연구기관 주도로 기획·수행되고 있음.

□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은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대하여 연구회의 공모를 거치도록 함에 더하여 연구기관이 작성한 협동연구사업 사업계획서를 연구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유사·중복 여부, 시의성 및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연구회가 심의하도록 함⁵⁵⁾. 이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대하여 연구회가 예산편성의 측면뿐 아니라 각 연구과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협동연구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임.

□ 따라서 연구회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관한 공모절차를 규정해 정해진 바와 같이 운용하고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 사업계획서에 관한 실질적 심의를 통해, 범국가적 정책과제·중장기 미래전략 등의 학제적 융·복합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55)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6조(사업계획서의 심의) ①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 사업계획서는 연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어 선정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기준은 연구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유사·중복 여부, 시의성 및 필요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으로 한다.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에 관하여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은 연구회에 협동연구에 대한 사업개요·추진목적·추진방법·향후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주관연구기관은 연구회의 기본계획서를 기초로 연구내용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연구회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여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과제기획과 사전검토 등을 연구회의 권한과 임무로 정하고 있음⁵⁶⁾. 그러나, 연구회에 설명에 따르면 2023년부터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에 대한 과제기획을 연구회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협동연구에 관한 중점연구기관을 선정하고 해당기관에서 기획하여 제출한 종합기획보고서에 기반하여 과제기획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과제기획을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개별 연구기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출산, 지역소멸, 디지털전환

56)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23조의2(사업의 수행 방식 등) ①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회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한다. 단, 수시연구과제 등은 필요에 따라 연구회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 사전에 협동연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추진목적, 추진방법, 향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는 이사장이 자문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연구회의 기본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주요 연구내용(대주제, 총괄연구과제, 세부연구과제 등), 연구진 구성 및 연구추진방법(워크숍, 세미나 등의 추진일정 등), 연구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회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융·복합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에 관한 협동연구가 수행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연구회는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과제기획을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연구회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와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연구과제 기획을 연계하여 수행하는 등 협동연구사업의 추진체계 일원화를 통해 협동연구사업이 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2025년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 과제(안)

기관명	과제명	2025 예산
대외	중국종합연구	370
	세계지역 전략연구	460
산업	중국종합연구	58
에너지	녹색에너지협동연구: 국제 산업부문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정책 및 규제동향 분석	110
교육	데이터기반 대학교육혁신 모니터링 연구(Ⅱ)	130
농촌	현장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개발 실증연구	126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	110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방안	10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	90
육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Ⅳ) : 통합지원체계 모델 시범 적용	80
	영유아·임산부 건강 분야 국제지식공유사업 모형 개발 및 실행 방안	230
청소년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60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청소년 사이버도박	40
형사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Ⅱ)	383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범죄변화 대응방안 연구(Ⅱ)	160
환경	녹색경제협동연구	187
계 : 18건		2,694

3. 연구기관 공통 : 예산변경 관련 제도개선 필요

□ 연구기관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각 연구기관에서 차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연구회는 12월 말에 그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고 있음⁵⁷⁾.

그 후 각 연구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이월금 및 결산잉여금 처분에 관한 예산을 더한 최종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고 있음⁵⁸⁾.

□ 연구기관 사업 중 일반사업은 전액 정부출연금으로 수행되고, 예산 편성 시 개별 연구과제마다 그 타당성을 심의받고 있는데, 국

5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연구회는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제8항에 따른 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36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 ①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목표,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 ① 연구회는 국가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 연구기관으로부터 차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목표,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 62

□ 각 연구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단, 이월금 및 결산잉여금 처분에 관한 예산 편성은 2024년 3월말까지 확정).

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일부가 변경되어 12월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사례가 있음.

<2024년도 기관별 대표적인 예산 변동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연구사업명	국회 확정 예산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전년도 12월)	이월 및 조정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3월)	조정액	예산 현액	집행액 (8월 말 기준)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지원사업(계속)	1,500	1,500	801	2,301	-	2,301	1,439
	사업인건비	76	76	119	195	△119	76	-
	공공요금	1	1	7	8	△6	2	-
	수용비	20	21	12	33	67	100	17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2	1	21	22	△5	17	1
	여비	25	38	38	76	34	110	5
	연구정보활동비	1	1	2	3	△2	1	-
	전문가활용비	90	74	16	90	81	171	68
	회의비	31	34	48	82	19	101	1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1,254	1,254	538	1,792	△69	1,723	1,335
한국개발 연구원	국가비전·전략 제시 관련 사업(신규)	780	780	-	780	-	780	258
	사업인건비	71	145	-	145	2	147	80
	공공요금	2	2	-	2	-	2	0
	수용비	45	45	-	45	10	55	26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1	11	-	11	20	31	19
	여비	134	60	-	60	78	138	48
	연구정보활동비	2	2	-	2	2	4	1
	전문가활용비	71	71	-	71	△1	70	15
	회의비	9	9	-	9	29	38	2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435	435	-	435	△140	295	46
한국노동 연구원	고령자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23~'26)	162	162	1	163	-	163	101
	사업인건비	36	36	-	36	-	36	21
	공공요금	2	2	-	2	-	2	2
	수용비	12	12	-	12	4	16	16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4	4	-	4	9	13	12

기관명	연구사업명	국회 확정 예산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전년도 12월)	이월 및 조정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3월)	조정액	예산 현액	집행액 (8월 말 기준)
	여비	8	14	-	14	△6	8	4
	연구정보활동비	3	3	-	3	4	7	6
	전문가활용비	21	17	2	19	△6	13	8
	회의비	11	10	△3	7	△1	6	4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65	65	2	67	△5	62	28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방안(신규)	110	110	-	110	-	110	56
	사업인건비	12	12	-	12	-	12	-
	공공요금	2	2	-	2	-	2	-
	수용비	8	8	-	8	-	8	1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	-	-	-	-	-
	여비	26	18	-	18	△3	15	6
	연구정보활동비	5	5	-	5	△2	3	1
	전문가활용비	8	8	-	8	3	11	8
	회의비	3	3	-	3	2	5	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35	43	-	43	-	43	37
	협동연구사업 성과인센티브	11	11	-	11	-	11	-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해양 SDGs 이행 지원체계 구축사업	171	171	18	189	-	189	58
	사업인건비	24	24	-	24	-	24	10
	공공요금	1	1	-	1	1	2	-
	수용비	18	25	-	25	1	26	5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8	10	4	14	5	19	3
	여비	37	37	△1	36	3	39	19
	연구정보활동비	5	5	-	5	12	17	8
	전문가활용비	30	30	3	33	△2	31	4
	회의비	6	5	14	19	2	21	7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42	34	△2	32	△22	10	2
한국행정 연구원	사회·기술 변화 대응 위험 거버넌스 연구사업(신규)	800	800	-	800	-	800	254
	사업인건비	190	182	-	182	△5	177	94
	공공요금	1	1	-	1	-	1	-
	수용비	82	82	-	82	28	110	28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26	26	-	26	10	36	15
	여비	44	44	-	44	△11	33	15
	연구정보활동비	16	16	-	16	△10	6	2

기관명	연구사업명	국회 확정 예산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전년도 12월)	이월 및 조정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3월)	조정액	예산 현액	집행액 (8월 말 기준)
	전문가활용비	301	307	-	307	△68	239	45
	회의비	79	81	-	81	△9	72	4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61	61	-	61	65	126	12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보수(계속)	132	132	5	137	-	137	45
	수용비	-	-	-	-	2	2	1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54	13	-	13	5	18	-
	여비	-	-	-	-	2	2	1
	연구정보활동비	-	-	-	-	2	2	-
	전문가활용비	-	-	5	5	-	5	3
	회의비	-	-	-	-	2	2	1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78	119	-	119	△13	106	3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또한, 이월금까지 포함하여 3월에 최종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도 많은 비목간 예산 변동으로 실제 변경·집행내역은 당초 계획과는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12월 이사회에서 변경 의결한 금액에서 당초 국회 확정 예산액으로 다시 변경된 사례, 유사한 형태의 변경이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사례⁵⁹⁾도 확인됨.

- 또한, 이월금이 동일 사업 내 동일 비목으로의 이월이 아닌 동일 사업 내 이월로 반영되다보니⁶⁰⁾, 전년도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59)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 SDGs 이행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와 '회의비' 비목은 예산 확정 단계에서 적게 편성했다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리고,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비목은 반대의 상황이 3년 연속 발생하였음.

60)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 25

□ 직전연도 사업비 집행잔액(이월금)은 당해연도 동일항목의 사업(기본연구 → 기본연구 / 연구지원 → 연

남은 금액은 해당 비목이 아닌 타 비목으로 편성되기도 함61).

<2024년도 기관별 대표적인 예산 변동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연구사업명	국회 확정 예산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전년도 12월)	이월 및 조정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3월)	조정액	예산 현액	집행액 (8월 말 기준)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지원사업(계속)	1,500	1,500	801	2,301	-	2,301	1,439
	사업인건비	76	76	119	195	△119	76	-
	공공요금	1	1	7	8	△6	2	-
	수용비	20	21	12	33	67	100	17

구지원 / 일반사업 → 일반사업)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1) 이월및조정액을 비목별로 전년도 집행잔액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이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관명	연구사업명	이사회 확정 예산액 (전년도12월)	이월 및 조정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3월)
			전년도 집행잔액	조정액		
한국노동 연구원	고령자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23~'26)	162	1		1	163
	사업인건비	36	1	△1	-	36
	공공요금	2	-	-	-	2
	수용비	12	-	-	-	12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4	-	-	-	4
	여비	14	1	△1	-	14
	연구정보활동비	3	-	-	-	3
	전문가활용비	17	1	1	2	19
	회의비	10	-	△3	△3	7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65	-	2	2	67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해양 SDGs 이행 지원체계 구축사업	171	18		18	189
	사업인건비	24	2	△2	-	24
	공공요금	1	-	-	-	1
	수용비	25	2	△2	-	25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0	-	4	4	14
	여비	37	6	△7	△1	36
	연구정보활동비	5	-	-	-	5
	전문가활용비	30	4	△1	3	33
	회의비	5	1	13	14	19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34	3	△5	△2	32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보수(계속)	132	5		5	137
	수용비	-	-	-	-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3	3	△3	-	13
	여비	-	1	△1	-	-
	연구정보활동비	-	1	△1	-	-
	전문가활용비	-	-	5	5	5
	회의비	-	-	-	-	-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119	-	-	-	119

기관명	연구사업명	국회 확정 예산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전년도 12월)	이월 및 조정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3월)	조정액	예산 현액	집행액 (8월 말 기준)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2	1	21	22	△5	17	1
	여비	25	38	38	76	34	110	5
	연구정보활동비	1	1	2	3	△2	1	-
	전문가활용비	90	74	16	90	81	171	68
	회의비	31	34	48	82	19	101	1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1,254	1,254	538	1,792	△69	1,723	1,335
한국개발 연구원	국가비전·전략 제시 관련 사업(신규)	780	780	-	780	-	780	258
	사업인건비	71	145	-	145	2	147	80
	공공요금	2	2	-	2	-	2	0
	수용비	45	45	-	45	10	55	26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1	11	-	11	20	31	19
	여비	134	60	-	60	78	138	48
	연구정보활동비	2	2	-	2	2	4	1
	전문가활용비	71	71	-	71	△1	70	15
	회의비	9	9	-	9	29	38	2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435	435	-	435	△140	295	46
한국노동 연구원	고령자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23~'26)	162	162	1	163	-	163	101
	사업인건비	36	36	-	36	-	36	21
	공공요금	2	2	-	2	-	2	2
	수용비	12	12	-	12	4	16	16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4	4	-	4	9	13	12
	여비	8	14	-	14	△6	8	4
	연구정보활동비	3	3	-	3	4	7	6
	전문가활용비	21	17	2	19	△6	13	8
	회의비	11	10	△3	7	△1	6	4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65	65	2	67	△5	62	28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K-푸드 플러스 (K-Food+) 수출 확대 방안(신규)	110	110	-	110	-	110	56
	사업인건비	12	12	-	12	-	12	-
	공공요금	2	2	-	2	-	2	-
	수용비	8	8	-	8	-	8	1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	-	-	-	-	-
	여비	26	18	-	18	△3	15	6
	연구정보활동비	5	5	-	5	△2	3	1
	전문가활용비	8	8	-	8	3	11	8

기관명	연구사업명	국회 확정 예산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전년도 12월)	이월 및 조정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3월)	조정액	예산 현액	집행액 (8월 말 기준)
	회의비	3	3	-	3	2	5	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35	43	-	43	-	43	37
	협동연구사업 성과인센티브	11	11	-	11	-	11	-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해양 SDGs 이행 지원체계 구축사업	171	171	18	189	-	189	58
	사업인건비	24	24	-	24	-	24	10
	공공요금	1	1	-	1	1	2	-
	수용비	18	25	-	25	1	26	5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8	10	4	14	5	19	3
	여비	37	37	△1	36	3	39	19
	연구정보활동비	5	5	-	5	12	17	8
	전문가활용비	30	30	3	33	△2	31	4
	회의비	6	5	14	19	2	21	7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42	34	△2	32	△22	10	2
한국행정 연구원	사회·기술 변화 대응 위험 거버넌스 연구사업(신규)	800	800	-	800	-	800	254
	사업인건비	190	182	-	182	△5	177	94
	공공요금	1	1	-	1	-	1	-
	수용비	82	82	-	82	28	110	28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26	26	-	26	10	36	15
	여비	44	44	-	44	△11	33	15
	연구정보활동비	16	16	-	16	△10	6	2
	전문가활용비	301	307	-	307	△68	239	45
	회의비	79	81	-	81	△9	72	4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61	61	-	61	65	126	12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보수(계속)	132	132	5	137	-	137	45
	수용비	-	-	-	-	2	2	1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54	13	-	13	5	18	-
	여비	-	-	-	-	2	2	1
	연구정보활동비	-	-	-	-	2	2	-
	전문가활용비	-	-	5	5	-	5	3
	회의비	-	-	-	-	2	2	1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78	119	-	119	△13	106	3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제작성)

- 이에 대하여 연구회는 연구과제 특성상 정책현안이 변경되어 일부 연구주제 등이 당초 국회 심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부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정부나 국회 심의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편성·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사업계획 변경기준>

구분	내용	변경권자	변경 절차
연구비 변경	- 연구비 총액 변경, 세부비목 변경	이사장	- 당초 연구비(7천만원 이상 과제) 대비 ±30% 초과 증감 과제 * 연구관련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은 당초 연구비(10천만원 이상 과제) 대비 ±30% 이상 증감 과제 - 과제폐지 및 신설절차와 동일
		원장	- 당초 연구비(7천만원 이상 과제) 대비 ±30% 이내 증감 과제(연구비 총액변경), 당초 연구비 7천만원 미만 과제 * 연구관련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은 당초 연구비(10천만원 이상 과제) 대비 ±30% 미만 증감 과제 - 연구기관 내부규정 적용 * 당초계획, 변경계획,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연구회에 통보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가가 예산을 확정 한 후 전년도 이월액을 반영하여 재편성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예산 편성 상의 특성, 연도 중 발생하는 사정변경에 대한 대응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하면,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과 실제 변경·집행내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과도한 예산 계획 변경은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회 또는 원장의 승인만으로도 예산 변경이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한 한도가 없는 계획 변경은 당초 국회의 심사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연구회는 면밀한 연구사업 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연구기관 공통

1)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을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사업으로 변경 필요

□ 현재 연구회와 각 연구기관들은 모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119억 6,200만원이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정보시스템 관련 일반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일반사업명	사업시작연도	2025 예산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서비스 사업	2010	302
	출연연 통합 업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016	1,250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사업	2017	1,266
	출연연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2022	800
	출연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구축 및 운영	2025	69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2010	240
	정보시스템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확충사업	2016	101
국토연구원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2017	38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2007	350
산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2016	260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15	2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17	183
통일연구원	정보보안및네트워크 운영·유지	2010	59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16	458
KDI국제정책대학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2024	285
	교육인프라 유지보수 및 시스템개발	2006	121
한국교육개발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03	8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04	100

기관	일반사업명	사업시작 연도	2025 예산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축	2011	74
	수능 성적제공 등 보안 인프라 구축	2021	70
	교육데이터 공유 선순환을 위한 KICE 지능형 플랫폼 구축	2023	150
	공공기관 정보화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운영	2024	344
한국교통연구원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2019	85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사업(3단계)	2022	69
한국노동연구원	통합유지보수사업	2019	1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산·보안 인프라 운영 사업	2019	145
한국법제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사업	2013	34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2011	257
육아정책연구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005	135
	전산실 운영사업	2005	5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관리·운영	2011	27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사업	2003	29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 기간제시스템 운영 지원	2013	144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2017	9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2011	217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2017	1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보안시스템 및 전산망 운영유지 보수	2015	210
한국행정연구원	E-KIPA 지식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2008	25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보수	2011	169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2011	96
한국환경연구원	KEI 정보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2016	135
	KEI 백업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2016	64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012	135
합계			11,96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연구회의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연구사업 중 일반사업은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정부대행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을 말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사업 정의>

구 분	내 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적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 (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 그런데, 연구회와 각 연구기관들이 일반사업으로 편성한 정보시스템 사업의 예산은 시스템 운영, 보안관리 체계 운영, 클라우드 비용을 위한 것으로, 한시성 사업이 아닌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계속해서 운영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특히,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전체로 심의를 받는 기관고유사업과 달리 일반사업은 매년 개별 연구과제마다 그 타당성을 심의받는 사업이고, 정부 출연금으로만 진행한다는 점에서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⁶²⁾⁶³⁾에 따라 매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정보화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관고유사업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일반사업으로 편성된 정보시스템 사업과는 별개로 기관고유사업으로 전산운영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쪽 사업의 주요 지출내역이 기관운영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각종 라이선스·소프트웨어·장비 구입 등임을 감안하면 이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3년, 2024년 기관별 정보시스템·전산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전산지원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PC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 PC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정보시스템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확충사업	- 바이러스 백신 및 내 PC자킴이 라이선스 계약 - 노후 네트워크 방화벽 교체 -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비
국토연구원	정보기술비	- <u>전산자원통합 유지보수</u>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 <u>전산자원통합 유지보수</u>

62)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p.13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 추진

63)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안 작성 지침에서도 재량지출 10% 감축 포함

기관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정보전산운영 사업	- 통합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산업연구원	2023 전산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보안서버(mOTP) 구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정보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 템 유지보수	- 그룹웨어시스템 유지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추진
에너지경제 연구원	에너지·자원 전산 NETWORK 운영	- 성과확산시스템 고도화 마스터 플랜(ISMP) 수립 - <u>통합정보시스템</u> 기능고도화 사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기록물생산관리시 스템 기능개선 사업 - <u>통합정보시스템</u> <u>(KEEI-ERP)</u> 웹표준화 및 호환성사업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전산개발 운영	- KISDI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 등 유지보수 -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 백신사용료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서버 및 스토리지, 차세대 방화벽 및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 - 웹메일 보안 SMS 서비스
통일연구원	전산시스템 운영·유지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u>정보시스템</u> <u>통합유지보수비</u> - 항온항습기 및 UPS유지보수비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유지	- 노후내부망 자료전송 서버구입 - <u>정보시스템</u> <u>통합유지보수비</u>
한국개발 연구원	전산개발 및 운용관리	- 하드웨어 구입 - 소프트웨어 사용료 - 경제정보센터 웹시스템 유지보수 - 포탈시스템 및 MIS 기능 고도화 -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	K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백신 및 보안, 통계 소프트웨어 사용료 - 포탈, 서버, 방화벽, V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한국교육 개발원	정보자료·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관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기관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한국교통 연구원	전산개발사업	- 신규 웹사이트 보안 약점 점검 및 모의 침투훈련 사업 - 인사노무 전자 시스템 유지 및 기능개선 용역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 연구 및 행정업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개선 사업 - 문서중앙화 솔루션 유지관리를 위한 에이전트 기능개선 사업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사업	- 보안솔루션 구매비
한국노동 연구원	정보자료 (전산) 운영	- <u>업무용 전산기기</u> <u>임차료</u> - 근로시간 관리 기능 개선사업	통합유지보수 사업	- <u>업무용 전산기기</u> <u>임차료</u>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전산·정보 시스템 운영	- IT인프라,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공간정보 분석용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 -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보안 인프라 운영 사업	- 홈페이지 및 CRM 유지보수 - 노후 DB서버 교체 - 침입탐지시스템 도입
한국법제 연구원	법제정보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 템 유지관리사업	- 각종 라이선스 및 백신 구입 - 정보보호 시스템 등 통합 유지보수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연구원 국영문 홈페이지, <u>그룹웨어</u> <u>및 업무포털시스템</u>, 원내 서버(MIS, CAPI 등)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u>그룹웨어 및</u> <u>업무포털시스템</u> 기능개발 및 유지관리

기관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육아정책 연구소	연구지원 전산운영	- 정보보인감사용 PC렌탈	통합정보시스 템 구축운영	- 통합유지보수대금
			전산실 운영사업	- 전산실 인터넷 전용선, 전기 사용료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기관홈페이지 유지보수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관리·운영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패스워드관리 솔루션 구축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전산운영부문 운영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PC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 PC유지보수비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정보 보안 관련 라이선스 계약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평생직업교육 훈련 정보화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u>정보시스템</u> <u>유지운영</u>	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 기간제시스템 운영 지원	-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서버 변경사업 - <u>정보시스템</u> <u>아웃소싱</u>
	HRD웹정보 서비스 생성·운영사업	- 리포지터리 유지보수 및 <u>정보시스템</u> <u>아웃소싱</u> 등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 <u>정보시스템</u> <u>아웃소싱</u>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전산·정보시스 템 관리 및 운영	- 웹메일 및 메신저 유지보수 - 전자도서관 솔루션유지보수 - 원대표홈페이지 기능수정 개선	통합유지보수 사업	- 전산장비유지보수 - H/W 통합 유지보수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소프트웨어 구매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전산개발 및 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보안시스 템 및 전산망 운영유지 보수	- KMI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한국행정 연구원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E-KIPA지식 행정포털시스 템 유지보수	- 홈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기관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한국환경 연구원	전산운영	- KEI 연구 업무 시스템 서버 SSD교체 및 윈도우 서버 라이선스	KEI 정보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 KEINS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KEI 백업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 KEI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용역
건축공간 연구원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 보안 소프트웨어 임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정보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기관고유사업비와 일반사업비에 모두 사업이 있는 기관만 대상으로 작성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따라서,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각 연구기관의 정보화사업은 기관 운영을 위한 고정적 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승인통계조사 관련 사업을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사업으로 변경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7개 기관은 33개의 국가승인통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국가승인통계 현황〉

(단위: 개)

기관명	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0	2	2	0	0
국토연구원	1	0	1	1	0	0
산업연구원	1	0	1	1	0	0
에너지경제연구원	2	0	2	1	1	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0	1	1	0	0
한국교육개발원	5	1	4	1	3	1
한국교통연구원	2	0	2	1	0	1
한국노동연구원	2	0	2	2	0	0
한국법제연구원	1	0	1	1	0	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1	2	3	0	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0	2	2	0	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0	1	1	0	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0	3	3	0	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0	3	3	0	0
한국행정연구원	2	0	2	2	0	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	0	1	1	0	0
건축공간연구원	1	0	1	1	0	0
합 계	33	2	31	27	4	2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
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
적 정보⁶⁴⁾로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⁶⁵⁾을 말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국가승인통계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통계명	승인 번호	종류	작성 형태	작성 주기	승인일자	예산	
							2025년 예산안	구분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한국기업혁신조사	395001	일반	조사	1년	2003-07-25	140	고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 조사	390002	일반	조사	월	2011-07-11	1,120	일반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405001	일반	조사	1년	2010-09-15	635	일반
한국노동 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336003	일반	조사	2년	2006-04-18	147	고유
한국법제 연구원	국민법의식실태조사	456001	일반	조사	2년	2019-08-08	180	일반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331009	일반	조사	1년	2006-10-16	1,080	일반
	한국의료패널조사	920012	일반	조사	1년	2007-09-07	1,710	일반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패널조사	154010	일반	조사	1년	2008-08-21	382	일반
	여성가족패널조사	338001	일반	조사	2년	2007-08-08	703	일반
한국조세	재정패널조사	341001	일반	조사	1년	2008-04-24	1,762	일반

64)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65)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관명	통계명	승인 번호	종류	작성 형태	작성 주기	승인일자	예산	
							2025년 예산안	구분
재정연구원								
한국직업 능력연구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389002	일반	조사	1년	2004-02-27	887	일반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389003	일반	조사	2년	2005-05-19	330	일반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 자조사	920009	일반	조사	반기	2013-07-26	50	일반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02001	일반	조사	1년	2009-06-24	155	일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402002	일반	조사	1년	2010-09-30	717	일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402003	일반	조사	1년	2013-04-18	493	일반
한국행정 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417001	일반	조사	1년	2013-07-09	292	일반
	공직생활실태조사	417002	일반	조사	1년	2017-07-26	192	일반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403001	일반	조사	2년	2009-08-19	453	일반
건축공간 연구원	건축서비스산업실태조사	462001	일반	조사	1년	2022-05-30	54	일반

* 출연금이 아닌 정부 수탁 등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제외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국가승인통계는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25년도 연구기관의 국가승인통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사업에 18건이 편성되어 있음.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반사업은 주로 한시성 사업에 편성되고 매년 그 타당성을 심의받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승인통계를 수행하는 사업은 기관고유사업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작성주기가 2년인 4건을 제외한 14건은 매년 수행하는 통계

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수행하는 사업 중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기관고유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5. 연구기관 공통: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중단 필요

□ 2022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안을 의결하여 공직유관단체장 등에게 정직 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⁶⁶⁾은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 및 행정해석⁶⁷⁾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66)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67) 근로개선정책과-3105(2011.9.30.)

◆ 정직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

<질 의>

-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정직(停職)'의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출근 의무를 부여한 본건 정직 처분의 경우, 기본급의 50%(금 100만원)만 지급하도록 한 인사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출근의무(본사 총무부 대기)를 부여하는 정직의 징계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 "출근의무를 부여한 정직 처분의 경우,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이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출근의무를 부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음.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귀 사 취업규칙에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105, 2011.9.20.】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 규칙〉

제66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해당 사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부설기관 포함) 중 15개 기관⁶⁸⁾은 「인사규정」 등의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음.

□ 그러나 나머지 12개 연구기관(부설기관 포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는지 2년이 경과한 2024년 현재까지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됨.⁶⁹⁾

6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69) 이에 대하여 각 연구기관은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측과 노동조합이 합의중에 있다는 의견임.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미이행 기관 현황〉

기관명	관련규정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징계지침」 제8조의2(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정직 :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국토연구원	「보수규정」 제10조(징계처분기간 중의 보수) ①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보수의 3분의 2를 빼고 지급한다.
에너지경제 연구원	「인사규정」 제26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매월 기본연봉월액의 2/3를 감한다.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정직: 월 급여의 3분의 2를 감급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통일연구원	정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3분의2를 감한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보수규정」 제15조(징계처분기간 중의 연봉) ①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지급될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한국 노동연구원	제54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3.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관명	관련규정
육아정책연구소	「인사관리규정」 제49조(징계의 효력)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다음에 의하여 행한다.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지급한다.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행한다. 2. 정직 :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연봉월액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그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한다.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제3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빼고 지급한다.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인사규정」 제42조(징계의 효력) ④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인사·징계관련 내부규정을 살펴
면, 대체적으로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2015년 12월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
공무원법」 제80조제3항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288호)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 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 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 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u>보수</u> 의 3분의 2를 감한다.	제80조(징계의 효력)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 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u>보수는 전 액을 감한다.</u>

- 각 연구기관이 인사·징계관련 내부규정의 원형으로 참고하고 있는 「
국가공무원법」이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체하
고 있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징계처분
자에 대한 불필요한 임금의 지급과 인건비를 포함하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함.

- 실제로 「국가공무원법」이 정직처분을 받은자의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개정된 이후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 19개 연구기관에서 총 2억 996만
원의 임금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됨.

〈2016년 이후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현황〉

기관명	지급대상 (명)	지급금액 (천원)	기관명	지급대상(명)	지급금액 (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5,35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6,243
국토연구원	1	97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1,966
에너지경제연구원	3	9,567	한국작업능력연구원	1	7,77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2,58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9,541
한국교육개발원	3	12,817	한국행정연구원	1	12,09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43,088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2	3,592
한국교통연구원	1	12,282	한국환경연구원	2	11,225
한국노동연구원	2	5,360	KIF경제정책대학원	2	6,100
한국법제연구원	2	7,577	육아정책연구소	1	3,4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48,374	합 계	41	209,962

□ 따라서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아니한 12개 연구기관은 정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예산이 불필요
하게 집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6. 연구기관 공통: 능률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 등 규정 개정 필요

□ 능률성과급은 연구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인건비 예산 외에 초과 수입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의미함.

○ 각 연구기관은 자체수입 초과달성, 경상운영비 비용절감 등의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①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에 우선 적립하고, ②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③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⁷⁰⁾.

〈2023년도 기관별 결산잉여금 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결산잉여금 처분				
	소계 (A+B+C+D)	퇴직 충당금(A)	연구개발 적립금(B)	능률 성과급(C)	기타* (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29	-	764	365	-
국토연구원	3,967	-	2,501	1,247	2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3	-	153	-	-
산업연구원	1,706	-	1,020	621	65
에너지경제연구원	1,306	-	967	339	-

7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08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중 예산총칙

제6조(결산잉여금의 사용) ① 제5조에 따른 자체수입 초과달성, 경상운영비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 적립, 연구개발적립금, 능률성과급 및 이사회 승인을 거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결산잉여금의 집행은 정부의 당해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5조(초과수입금의 사용 및 수입대응지출) 연구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능률제고를 위하여 자체수입이 당초 수입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수입금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접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직접경비는 수입금액과의 연관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집행할 수 있으며, 인건비성 경비 및 경직성 경상비 목적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기관	결산잉여금 처분				
	소계 (A+B+C+D)	퇴직 충당금(A)	연구개발 적립금(B)	능률 성과급(C)	기타* (D)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26	-	1,163	263	-
통일연구원	27	-	27	-	-
한국개발연구원	3,517	-	1,961	1,556	-
KDI국제정책대학원	1,822	-	1,231	591	-
한국교육개발원	3,557	-	2,111	1,44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718	-	3,590	2,128	-
한국교통연구원	7,009	-	5,663	989	357
한국노동연구원	478	-	300	17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37	-	762	575	-
한국법제연구원	1,876	-	1,256	62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15	-	1,045	870	-
육아정책연구소	57	-	55	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8	-	82	7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1	-	211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00	-	1,111	88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96	-	472	424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262	-	1,889	1,373	-
한국행정연구원	381	61	236	84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5	-	101	14	-
한국환경연구원	3,321	-	1,944	1,377	-
건축공간연구원	1,277	-	701	576	-
합계	48,621	61	31,316	16,603	641

* 감사원 및 이사회 후속조치(인건비 부담집행)에 따른 기관고유사업비 적립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최근 3년간(2021~202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관의 능률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 24개 기관에서 142억
 5,600만원, 2022년 21개 기관에서 141억 1,500만원, 2023년 20개 기
 관에서 152억 7,600만원을 지급하였음(2024년 10월 현재 기준)⁷¹⁾.

71) 한국교통연구원은 2024년 11월, 한국노동연구원은 2024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기관별 능률성과급 지급 현황(표)의 내용은 계획 내용임. 또한 육아정책연구소도 2024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나 현재 계획된 내용 없음.

〈기관별 능률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급액	497,517	295,221	364,592
	지급인원	175	171	174
국토연구원	지급액	1,258,809	1,102,964	1,240,844
	지급인원	324	332	3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급액	108,745	-	-
	지급인원	212	-	-
산업연구원	지급액	265,847	737,924	609,788
	지급인원	217	219	215
에너지경제연구원	지급액	204,000	-	338,600
	지급인원	194	-	19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급액	736,943	485,477	263,000
	지급인원	209	200	205
통일연구원	지급액	-	-	-
	지급인원	-	-	-
한국개발연구원	지급액	593,255	603,583	1,514,867
	지급인원	445	470	477
KDI국제정책대학원	지급액	546,353	480,987	591,477
	지급인원	158	161	168
한국교육개발원	지급액	793,444	881,203	1,446,247
	지급인원	464	464	47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급액	1,909,276	2,047,088	2,128,477
	지급인원	426	451	478
한국교통연구원	지급액	817,174	859,912	989,375
	지급인원	253	251	260
한국노동연구원	지급액	202,782	304,421	177,858
	지급인원	146	142	1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급액	440,421	497,153	575,334
	지급인원	298	301	298
한국법제연구원	지급액	640,314	515,752	620,109
	지급인원	150	155	15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급액	365,000	560,000	870,000
	지급인원	256	267	259
육아정책연구소	지급액	33,551	32,999	-
	지급인원	57	6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급액	74,000	322,582	71,252
	지급인원	117	126	117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급액	98,161	-	-
	지급인원	323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급액	639,975	593,487	887,172
	지급인원	204	210	2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급액	507,000	432,000	424,000
	지급인원	135	123	12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급액	1,253,979	1,354,925	1,318,229
	지급인원	307	323	305
한국행정연구원	지급액	237,000	146,000	84,000
	지급인원	117	125	12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지급액	-	-	13,811
	지급인원	-	-	89
한국환경연구원	지급액	1,520,000	1,326,900	1,377,000
	지급인원	312	317	303
건축공간연구원	지급액	513,270	534,460	537,279
	지급인원	129	137	130
지급액 합계		14,256,816	14,115,038	16,443,311

* 2023년의 경우 지급한 기관은 지급액을, 연말 지급 등으로 지급 계획만 있는 경우에는 계획기준으로 작성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그런데 각 연구기관별 능률성과급 관련 지침 등을 살펴보면, 국토연구원 등 14개 기관은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⁷²⁾ 등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3개 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음.

〈기관별 능률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 규정 현황〉

기관	지급제외 대상	비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국토연구원	①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정직)을 받은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20. 12. 11. 제정

72) ①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정직)을 받은 자, ② 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③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④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⑤ 성희롱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⑥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기관	지급제외 대상	비고
	령)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 범죄,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⑥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2. 3. 13. 신설
에너지경제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통일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KDI국제정책대학원	-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0. 11. 30. 신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0. 12. 19. 신설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1. 5. 19. 개정
한국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1. 3. 8. 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 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자	21. 8. 3. 개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스토킹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24. 4. 2. 신설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22. 12. 26. 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1. 5. 31. 신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1. 4. 2. 신설

기관	지급제외 대상	비고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	
한국환경연구원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	22. 10. 4. 제정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1. 5. 4. 신설

-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총 4,400만원(10개 기관, 17명)의 능률성과급이 지급되었는데, 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급된 능률성과급 현황〉

(단위: 천원)

기관	구분	성명	징계일자	징계 유형	차년도 성과급	비고
한국개발 연구원	공무직	○○○	2022.08.12.	정직	385	정직기간 제외 후 산정하여 지급
KDI국제 정책대학원	행정직	○○○	2022.4.25.	정직	2,428	정직기간 제외 후 산정하여 지급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연구직	○○○	2019.08.01.	정직	6,354	정직기간 제외 후 산정하여 지급
	행정직	○○○	2023.04.01.	정직	6,822	
	행정직	○○○	2023.10.01.	정직	6,648	
한국법제 연구원	연구직	○○○	2020.02.11.	해임	275	규정 개정 이전('21. 3. 8.) 지급
	연구직	○○○	2021.04.15.	정직	5,971	연도 중간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능률성과급 전액 미지급시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의견이 있어, 규정이 개정된 해에는 정직기간을 제외 후 산정하여 지급하였음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연구직	○○○	2019.06.01	정직	1,929	규정 개정 이전('21. 8. 3.) 지급
	연구직	○○○	2020.03.11	정직	1,042	
	연구직	○○○	2020.05.01	정직	1,035	
	연구직	○○○	2020.06.16	정직	1,601	
육아정책 연구소	연구직	○○○	2020.12.02.	정직	371	

기관	구분	성명	징계일자	징계유형	차년도 성과급	비고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연구직	○○○	2020.05.25.	정직	1,289	
한국행정 연구원	행정직	○○○	2019.12.02.	정직	428	규정 개정 이전('21. 4. 2.) 지급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직	○○○	2023.09.11	정직	165	
한국환경 연구원	행정직	○○○	2018.05.09	정직	1,864	규정 개정 이전('22. 10. 4.) 지급
	연구직	○○○	2019.01.15	정직	5,851	
합 계					44,45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민권익위원회도 2020년 10월에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⁷³⁾.

○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도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⁷⁴⁾.

73)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1,227개)
참고로, 유사한 내용으로 권익위는 2022년 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운영 투명성 제고(대상기관: 10개 테크노파크)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도 징계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한 바 있음.

74)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p.226, 499

○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또한,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능률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⁷⁵⁾, 성과급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시도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연구기관도 환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통일연구원의 경우 「능률성과급지급규칙」에서 능률성과급의 지급재원⁷⁶⁾으로 예산의 인건비로 편성된 능률성과급과 이자수

경우에는 성과연봉(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75)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⑪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6) 제3조(지급재원) 능률성과급의 지급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인건비로 편성된 능률성과급
2.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자체수입 초과분
3. 이자수입, 잡수익 등 자체수입 초과분

입, 잡수익 등 자체수입 초과분을 명시하고 있는데⁷⁷⁾, 2011년 이전까지 관리하던 인건비 내 능률성과급이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따라 인건비의 성과연봉에 산입됨에 따라 2011년 이후에는 인건비 내 능률성과급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⁷⁸⁾, 이자수입 등의 초과분은 경영개선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능률성과급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⁷⁹⁾⁸⁰⁾ 이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⁸¹⁾.

□ 따라서, 각 연구기관은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능률성과급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능률성과급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성과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비용절감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

77) 다만, 통일연구원은 동 지급규칙을 제정한 이후로 능률성과급을 지급한 사례없음.

78)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207

79)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07

이자수입은 인건비,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경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8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0개 기관은 지급 재원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자체수입 초과분을 규정하면서 이자수입 및 잡수익(기타수입) 초과분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81) 이에 대하여 통일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2017. 10. 30.)에 따라 조속히 규정 개정하여 현행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⁸²⁾: 연구기관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4,500만원(17.8%) 증가한 221억 2,2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8,504	18,777	22,122	3,345	17.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연구기관 인센티브’는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배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관고유사업의 일종임. 2025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8억 8,200만원이 편성됨.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연구기관 인센티브	882	882	882	-	-

82) 세부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2024년 연구기관 인센티브 지급내역〉

(단위: 천원)

기관명	평가등급	기준액	최종 산출금액1)
국토연구원	A	100,000	98,5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	50,000	48,500
에너지경제연구원	B	50,000	48,500
통일연구원	B	50,000	48,500
한국개발연구원	B	50,000	48,5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	100,000	98,5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	100,000	98,5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	100,000	98,50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B	50,000	48,5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	100,000	98,500
한국행정연구원	B	50,000	48,500
건축공간연구원	A	100,000	98,500
합 계		900,000	882,000

주1) 평가등급별 기준금액에 따라 배분 후 잔액은 배정기관의 수로 균등 배분(기관별 -1,500천원)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연구기관 인센티브’ 지급의 근거가 되는 연구기관 평가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중점추진사업을 구성하는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목표의 타당성, 이행 노력, 목표 달성도, 사업효과 및 정책 기여도의 4개 평가지표로 구성됨.⁸³⁾

83)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의 국가싱크탱크로서의 연구역량 집중과 중장기적 연구 성과관리 체계로의 제도 개편을 위해 기존 연구과정·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공통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던 연구기관 평가의 체계를 연구기관별 중점추진사업의 성과 및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선하였음(2023년 6월)

현행			개선		
구분	평가지표	배점	구분	평가지표 및 항목	배점
연구 분야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연구과정관리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연구보고서 우수성)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800 (정성/정량)	연구 분야	(중점추진사업 실천과제별) ●목표의 타당성 ●이행 노력 ●목표 달성도 ●사업우수성 및 정책 기여도 ※ 중점추진사업 3~5개, 중점추진사업별 실천과제 1~3개	800 (정성/정량)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표〉

평가지표	내 용	배점 비중
목표의 타당성	○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고려한 추진전략-실천과제 - 성과목표 - 성과지표 간 적정성 ○ 성과목표와 개별사업 간 적합성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혁신적 및 도전적 성격	30%
이행 노력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한 수행여부 및 수행 충실성 ○ 환경변화 및 정책수요 대응성 ○ 성과지표 이행의 적극성 · 혁신성	10%~20%
목표 달성도	○ 사전에 설정된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10%~20%
사업효과 및 정책기여도	○ 사업효과 : 국정과제 기여도, 단기·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 의사결정상 영향력, 학술적 기여도, 사회적 영향력, 결과의 양적실적 및 질적 수준 등 ○ 정책기여도 ① 연구사업 정책기여도 :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화 실적, 부처 등 대상 정책 만족도 조사 등 ② 정책 집행사업 정책기여도 : 사업집행의 효과성, 환류 및 사업개선의 적정성, 해외사무소 평가 등)	40% 이상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편, 연구기관 평가는 평가대상연도(N년)를 기준으로 ①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제출하고(~N년 3월), ②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N+1년 1월), ③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N+1년 1월~4월)하는 절차를 거쳐 수행되는데 2023년도의 경우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2023년 8월에 제출되었다는 점, 2024년도의 경우에도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2024년 8월에 재접수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연구기관 평가 절차〉

단계	(N년, ~3월*) 경영목표 실천계획 제출·승인	⇨ (N+1년, 1월) 실적보고서 제출	⇨ (N+1년, 1월~4월) 평가 실시
단계별 주요 내용	-‘경영목표→추진전략 →실천과제’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실천과제(1~3개) 임무유형 매칭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 -‘추진전략’ 중, 중점추진사업 3~5개 자율 선정 -중점추진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기관 자율배점 부여 (150~300점, 50점 단위)	-중점추진사업 및 실천과제 실적 작성·제출	-중점추진사업별 해당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결과 산출

□ 이에 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3년도의 경우 2023년 6월 평가지표 등에 관한 제도변경이 발생하여 「경영목표 실천계획」 접수가 늦어졌으며, 2024년도의 경우 2024년 3월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접수하였으나,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 시 연구기관이 평이하고 보수적인 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연구기관 평가단의 의견에 따라 3월 접수한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수정·보완을 거쳐 2024년 8월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재접수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연구기관 평가 절차의 첫 단계인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평가대상연도의 8월에 접수하게 되면, 경영목표에 포함된 성과목표와 연구기관이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 전 실시한 각 연구과

제간 괴리가 발생하여 연중 업무수행의 효과성과 지속성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제도도입 및 정립시기에 해당하는 2023년 및 2024년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절차에 따르면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제출·승인이 평가대상연도 3월까지 실시된다는 점에서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연구기관 평가의 타당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국회는 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기본연구사업) 및 일반사업과 이에 포함된 각각의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를 통해 각 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이후인 그 다음해 3월에 수립된다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시 각 연구기관의 사업은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립된 것에 해당함. 이는 국회의 연구기관 출연금 예산 심의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각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한 각 연구과제 및 사업의 체계적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KDI국제정책대학원⁸⁴⁾: 교육협력 및 지식교류포럼 내실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개발 및 공공정책, 공공관리 분야 국내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설기관임.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42억 100만원(16.4%) 감소한 214억 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KDI국제정책대학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KDI국제정책대학원	23,260	25,608	21,407	△4,201	△16.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은 미국과 유럽의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 DC와 베를린 소재 우수 대학과의 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한·미, 한·유럽 관계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과,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지식 교류 사업 추진을 통한 지한(知韓)인력 양성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5억 6,800만원(64.5%) 증가한 14억 4,800만원이 편성됨.

84) 세부사업: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	1,866	880	1,448	568	64.5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 예산편성 세부내역〉

2024년	2025년
○ 교육협력: 8억 8,000만원 - 존스홉킨스대: 1억원 - 조지워싱턴대: 2억 9,500만원 - 베를린자유대: 4억 8,500만원	○ 교육협력: 10억 7,000만원 - 존스홉킨스대: 1억원 - 조지워싱턴대: 4억 8,500만원 - 베를린자유대: 4억 8,500만원 ○ 지식교류포럼: 3억 7,800만원 - 재정정책 지식교류포럼: 3억 4,660만원 - 국외여비: 3,140만원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교육협력’을 위해 미국 존스홉킨스대(1억원), 미국 조지워싱턴대(4억 8,500만원), 독일 베를린자유대(4억 8,500만원)를 대상으로 분담금 명목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당해 분담금은 각 학교에서 장학금 지급이나 한국학 프로그램 관련 인건비 및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음. KDI국제정책대학원에 따르면 2025년에는 3개 학교에서 총 20명 가량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임.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협력대학 한국학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한국학 강의 개설 등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KDI국제정책대학원에 따르면 협력대학 세 곳 중 존스홉킨스대에

만 유일하게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조지 워싱턴대와 베를린자유대의 경우 교육협력사업을 통한 강좌 개설 계획은 없음⁸⁵⁾. 또한 존스홉킨스대에서 개설된 강좌 대부분이 한국어 강좌라는 점에서 사회과학으로서의 한국학 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강좌의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⁸⁶⁾.

〈2025년도 존스홉킨스대 SAIS 개설 강좌명〉

◦ North Korea Policymaker Primer	◦ Korean Intermediate Mid I
◦ Korean Novice	◦ Korean Intermediate Mid II
◦ Korean Novice High	◦ Korean Intermediate High
◦ Korean Intermediate Low	◦ Korean Advanced High III

□ 한편,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지식교류포럼’을 위해 3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정책공공외교”를 수행하는 한편, 국제 재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정책 지식교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외교부의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은 중점 협력국가 및 지역 대상 정책 소통 강화 부문에 있어 미국의 경우 “정책공공외교”영역을 기존 안보 분야에서 공급망·보건·기후변화

85) 협력학교 자체의 한국학 강의는 개설·운용중에 있음.

86) 한국학 관련 존스홉킨스대 SAIS 개설 강좌 현황 : (2022 봄) 3개 → (2022 가을) 3개 → (2023 봄) 2개 → (2023 가을) 3개 → (2024 봄) 1개 → (2025 봄) 1개

등 신흥 이슈 분야로 확대하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가치, 신흥 이슈(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력 등) 분야로 협력을 심화하도록 정함⁸⁷⁾. 또한 외교부의 「2024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에서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대비 자유민주주의·평화·인권·환경 등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정책공공외교가 강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은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① 국제사회 평화·인권·자유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②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기여국 이미지 제고, ③ 기후변화·탄소중립 등 환경·에너지 분야 글로벌 리더십 인식 확산 등의 세부과제를 정하고 있으므로⁸⁸⁾,

87)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중 발췌

〔1-2〕 중점 협력국가 및 지역 대상 정책 소통 강화

1-2-① 주요국 대상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전부처, 지자체)

- **(미국)** 정책공공외교 영역을 기존 안보 분야에서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등 신흥 이슈 분야로 확대
 - ※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가치, 신흥 이슈(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력 등) 분야로 협력 확대 및 심화
 - △對美 권역별 정책공공외교 △미 주요 싱크탱크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KF-CSIS 한미전략포럼, Atlantic Council 포럼, KNDA-USIP 한미 양자 대화, KNDA-CEIP-JIIA 한미일 3자 1.5트랙 대화 등) △對의회 정책공공외교 사업 △한미 공공외교 포럼 △KF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사업 등
 - ※ KF ‘한미 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공급망, 경제, 기술 등 신흥 이슈 논의 활성화 및 학계외 다양한 공공외교 파트너 발굴을 통한 현지 밀착형 네트워킹 강화
 - ‘23년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주요 싱크탱크 인사 초청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한미동맹 70년사 발간 등을 통한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88)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중 발췌

이와 관련한 지식교류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정부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수행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중점과제 1-3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		
	1-3-① 국제사회 평화, 인권, 자유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외교부, 국방부 여가부, 교육부, 보훈처, 지자체
	1-3-②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기여국 이미지 제고	외교부 산업부, 지자체
	1-3-③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에너지 분야 글로벌 리더십 인식 확산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⁸⁹⁾: 청년 대상 조세교육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4억 6,000만원(1.2%) 증가한 382억 7,8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5,132	37,818	38,278	460	1.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조세교육 운영사업’은 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올바른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조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려는 사업임. ‘조세교육 운영사업’은 2023년 신설되었으며,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2억 5,000만원(83.3%) 증가한 5억 5,000만원이 편성됨.

89) 세부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1548-30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조세교육 운영사업	279	300	550	250	83.3

□ ‘조세교육 운영사업’은 초등 조세교육사업, 고등 조세교육사업, 다문화 조세교육사업 등으로 구성됨.

〈조세교육 운영사업 예산편성 세부내역〉

2024년	2025년
◦ 초등 조세교육사업 : 2억 2,225만원 ◦ 고등 조세교육사업 : 6,185만원 ◦ 기타 행정비용 : 1,590만원	◦ 초등 조세교육사업 : 4억 1,830만원 ◦ 고등 조세교육사업 : 9,480만원 ◦ 다문화 조세교육사업 : 2,100만원 ◦ 기타 행정비용 : 1,590만원

□ 초등 조세교육사업은 초등학생 대상 세심교실을 운영하고 참여 교사 연수 및 교재·교구 개정 및 보완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세심교실이란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교실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소득 및 소비, 세금 납부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조세의 필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한 학생 참여형 조세교육 프로그램임. 2023년도에는 세종·충청권 37개학급을 대상으로 세심교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전국 178개 학급으로 세심교실을 확대운영하였음. 2025년도에는 300학급으로 세심교실을 확대할 계획임.

□ 고등 조세교육사업의 경우 2024년 현재 교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세종 인근 고등학교에서 시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문화(이민자, 탈북자) 조세교육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 교재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시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다만, 조세교육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는 교육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특히,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국민을 의미하는 청년세대⁹⁰⁾는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로서 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을 처음으로 납부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게 된다는 점에서 세금에 대한 이해·결제방법·재테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청년세대에 제공하여 경제인으로서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청년 대상의 조세교육을 신설함으로써 초등-고등-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조세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23년 1월 전국 25~64세 성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납세의식을 조사(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조사)한 결과 2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4%가 각종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라고 답변하는 등⁹¹⁾ 청년세대의 조세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당해 조사결과보고서는 20대의 조세 이해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다는 조사결과를 지적하며, 미래의 납세자인 초·중등 학생부터 조

90)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91) 김재진. "조세교육, 왜 필요한가." 재정포럼 331 (2024): 2-5.

세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여 납세의식과 납세순응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
적한 바 있음.⁹²⁾

〈연령별 조세이해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9.2	49.1	48.5	48.8	47.1
(조세이해도 관련 설문 문항의 구성) -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가가치세율,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소득세 최고세율				

92) 홍범교,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조사”, 조세재정Brief

※ 참고자료: 세심교실

함께하는 세심(稅心)교실이란?

- ✧ 함께하는 세심교실은 초등 5, 6학년을 대상으로 교실 속 작은 정부를 세우고 학생들이 직접 소득 및 소비, 세금 납부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조세의 필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한 **학생 참여형 조세교육 프로그램**
* 세심(稅心)은 “조세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심다”를 의미
- ✧ 학생들의 학급 내 직업과 소득, 납세내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반응형 웹페이지는 물론, ‘세금왕게임’ 등 보드게임 형태로 제작된 교구와 활동키트로 쉽고 재미있게 조세에 대해 접할 수 있음
- ✧ **세심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세금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체득하여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 교사연수를 통해 교사에게 세심교실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심교실 활동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제공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함
- ✧ 초등학생 대상 함께하는 세심교실 교재 구성

차시	주제	주요 내용 및 활동
0	세심교실을 만들어요!	우리 반 국가(세심나라) 만들기
1	우리 모두를 위한 세금이 필요해!	세금의 필요성 알아보기
2	세금을 어떻게 정할까?	세심회의로 첫 세금을 정하다!
3	세금, 공평하게 내려면?	세법 정하기!
4	세금, 어디에 쓰일까요?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할까?
5	물건을 살 때도 세금을 내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보아요!
6	회사도 세금을 낸다고?	법인세 내기 어렵지 않아요!
7	집을 살 때,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취득세와 재산세를 정해봅시다.
8	세금을 안 내려 한다고?	성실 납세자가 되어보기!
9	한 해동안 쓴 세금을 결산해요	리멤버 세금교실!
10	안녕! 진짜 세금 내는 세상!	굿바이 세심교실!

함께하는 세심교실 추진 현황

'23. 2. 27.	'23. 9월 ~ 11월	'24. 1월 ~ 현재	'24년 하반기
연구원 내 전담조직 신설 및 교재·교육과정 개발 착수	세종/충청권역 초등학교 5·6학년 37개 학급 대상 「함께하는 세심교실」 시범사업 실시	전국 단위(제주포함) 178개 학급(4,279여명) 대상 「함께하는 세심교실」 확대 운영	'24년 하반기 다문화 / 작은 학급 대상 찾아가는 세심교실 운영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⁹³⁾: 연구성과 홍보 효과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대외경제정책 및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 비전과 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15억 2,400만원(5.1%) 증가한 313억 4,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630	29,816	31,340	1,524	5.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정책연구브리핑’은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으로 실시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보고서 이외에 정책연구브리핑을 발간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제고하고 연구결과가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93) 세부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1534-301)

- ‘정책연구브리핑’은 연구성과의 이해 및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보고서만을 제공하는 타 연구기관에도 도입·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됨.
- 다만, ‘정책연구브리핑’의 연구성과 홍보 목적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브리핑’ 발간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3년 12월 종료된 연구를 2024년 4월 정책연구브리핑을 통해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연구종료와 동시에 연구결과를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위와 같은 지적을 토대로 2023년 정책연구브리핑 발간 내역을 살펴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5건의 2023년도 기본연구사업에 대하여 정책연구브리핑을 발간하였는데 당초 계획과 같이 2024년 4월 정책연구브리핑을 발간한 연구과제는 4건에 불과하며, 3건의 연구과제는 2024년 5월에, 6건의 연구과제는 2024년 6월에, 4건의 연구과제는 2024년 7월에, 8건의 연구과제는 2024년 8월에 정책연구브리핑을 발간하였음.

〈2023년 기본연구보고서에 대한 정책연구브리핑 발간월 현황〉

2024년 4월	2024년 5월	2024년 6월	2024년 7월	2024년 8월	합계
4건	3건	6건	4건	8건	25건

□ ‘정책연구브리핑’은 방대한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요약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결과물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시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전년도 12월에 발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브리핑은 연구보고서 발간 후 최소 4개월 최대 8개월이 지난 후에 발간함으로써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정책연구브리핑을 발간·공개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2023년 기본연구보고서 및 정책연구브리핑 발간일 상세 내역

과제명	기본연구보고서 발간일	정책연구브리핑 발간일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23.12.29	‘24.08.01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간 협력방안 연구	‘23.12.29	‘24.06.0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을 중심으로	‘23.12.30	‘24.05.23
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3.12.30	‘24.08.09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23.12.29	‘24.08.01
순대외금융자산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23.12.29	‘24.06.14
대외 충격의 파급효과와 국가 간 자본유출입	‘23.12.29	‘24.08.09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23.12.29	‘24.04.05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23.12.29	‘24.08.05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3.12.30	‘24.08.01
기업결합과 혁신 :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23.12.29	‘24.04.09
대외전략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안 연구	‘23.12.29	‘24.07.31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	‘23.12.29	‘24.07.30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23.12.29	‘24.07.29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23.12.30	‘24.05.09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3.12.29	‘24.06.11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23.12.29	‘24.07.12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	‘23.12.29	‘24.08.09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3.12.29	‘24.06.04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23.12.29	‘24.04.17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23.12.29	‘24.06.05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 협력 확대 방안	‘23.12.29	‘24.06.10
MENA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시사점	‘23.12.29	‘24.05.23
대러 경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23.12.29	‘24.08.01
북한의 관세 및 무역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23.12.29	‘24.04.15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⁹⁴⁾: 법무수요조사결과 환류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고,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00만원(2.3%)이 증가한 136억 8,8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814	13,379	13,688	309	2.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법무정책조사·연구사업’은 기존의 법제도 및 법률 중심의 비교법 연구가 아닌 실증조사 등을 통해 증거에 기반한 법무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1억 5,000만원(17.5%)이 증가한 10억 500만원이 편성됨.

94) 세부사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553-30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무정책조사·연구사업	900	855	1,005	150	17.5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5년 ‘법무정책조사·연구사업’을 통해 11개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임.

〈법무정책조사·연구사업 세부 연구과제 현황〉

2024년		2025년	
①	법무 수요조사(2)	①	2025 법무 수요조사
②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Ⅱ)	②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Ⅲ):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
③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Ⅰ)	③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Ⅱ)
④	첨단기술 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Ⅰ) - 초거대 인공지능	④	첨단기술 트렌드에 대응하는 형사·법무정책 연구(Ⅱ) - 바이오 기술
⑤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실증적 연구	⑤	부동산 직거래 현황과 안전 거래 확보 방안
⑥	미래 사회 대비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찬자관계 결정 기준 정비	⑥	헤이그부양협약에 관한 연구
⑦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Ⅱ)	⑦	비대면 의료의 도입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방안: 신의료기술을 중심으로
⑧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⑧	FTA상 독립전문가 규정에 대한 고찰: 한국의 대(對)아세안 이민정책의 함의를 중심으로
⑨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	⑨	난민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사법 절차 소요비용 분석
		⑩	민사소송절차 선진화에 관한 연구
		⑪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수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Ⅰ)

□ 11개의 세부 연구과제 중 ‘법무 수요조사’는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으로 사법전문가나 국가기관의 관점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경험을 파악하여, 법적 서비스 경험과 필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적 영역 뿐 아니라 효과적인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사업임.

- ‘법무 수요조사’를 위한 2025년 예산은 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 예산에 비해 7,026만원 증액되었음. 증액분은 주로 설문 조사용역비(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증액에 해당함.

〈법무 수요조사 예산 세부내역〉

(단위: 만원)

2024 법무 수요조사		2025 법무 수요조사	
사업인건비	6,384	사업인건비	5,320
공공요금	94	공공요금	94
수용비	900	수용비	921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88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40
여 비	2,148	여 비	2,690
연구정보활동비	1,030	연구정보활동비	890
전문가활용비	1,780	전문가활용비	1,690
회의비	850	회의비	355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9,100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17,400
합 계	22,474	합 계	29,500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법무 수요조사’ 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각 연도별 중점 조사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별 실제 국민이 겪는 문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함.

〈법무 수요조사 세부계획〉

2023년(1차연도)	법무 수요 일반 및 법무 지원
2024년(2차연도)	토지 및 주택
2025년(3차연도)	가족 및 소비자
2026년(4차연도)	공공서비스 및 금융
2027년(5차연도)	고용 및 인권

- 다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법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세부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의 환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구결과 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2023년 수행된 법무수요조사 결과보고서는 “주민의 수요에 따른 법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 “법무 취약집단 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관 설립”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으 나, 이와 관련한 세부연구과제를 2024년 및 2025년 ‘법무정책조사· 연구사업’ 계획에서 발견할 수 없음.
- 위와 같이 ‘법무 수요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세부연구과제가 수립되 지 않는 경우 ‘법무 수요조사’는 단순히 현황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에 그칠 뿐 수요조사에 따른 구체적 정책수립에의 기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국회는 2021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 이는 연구원이 그간에 수행해 왔던 범죄의 실태와 원인 그 대책에 관한 연구에 더해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 분석·연구를 통해 비(非)형사법적 법령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위와 같은 법개정 취지에 따라 법무정책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무정책조사·연구사업’의 세부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법무 수요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참고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정관상 사업범위 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관
1.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2.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형사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4.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5.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6.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계도 및 연수 7. 북한의 범죄와 형사관계법령 및 통일대비 형사정책연구 8.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사업 2.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 3. <u>민·상사, 송무, 국제법무, 인권법무, 출입국법무, 법조인력정책 등 법무관계법령 및 법무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u>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성과확산, 출판, 공동연구, 국내·외 교류협력, 위·수탁, 통계정보 관리·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대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한국행정연구원⁹⁵⁾: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공개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수립과 행정분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600만원(2.8%)이 증가한 142억 9,2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행정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 행정연구원	14,369	13,906	14,292	386	2.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은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환류함으로써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4억 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95) 세부사업: 한국행정연구원(1552-30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	389	406	406	-	-

□ 한국행정연구원은 일반국민과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24년도 상반기에는 일반국민 9,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 하반기에는 일반국민 9,600명 및 정책수요자 9,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2025년도에는 2024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는 2021년까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에 반영되었으나 2022년 이후로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의 국정과제 이행점검 및 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 대상〉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시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표본	일반국민	10,400명	5,400명	5,400명	9,600명	9,600명
	정책수요자	7,800명	-	5,400명	-	9,600명

□ 한국행정연구원은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을 수행함에 있

어 그 조사결과를 정부(국무조정실)에만 제공하고, 이를 타 기관 연구자·전문가 및 국민 일반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업무관리규칙」 제39조⁹⁶⁾는 사업이 완료된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연구성과 홍보·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성과물 배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하도록 정하므로 그 취지에 따라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의 공개는 각 국정만족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추이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 총서 「국정과제 관리 개선방안 보고서」(2022년)는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가 포함된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업무평가 국민만족도 활용제고 방안」 연구보고서(2016년)는 정부업무평가 국민만족도 조사가 그 중요성

96) 제39조(연구성과 확산) 홍보팀장은 사업이 완료된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연구성과 홍보·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한다. 단, 수탁연구사업과 관련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성과물 배포(연구보고서, 기타 연구자료, 홈페이지 등)
2. 연구성과 최종보고회 및 정책간담회 개최
3. 보도자료 배포
4. 전자출판물(뉴스레터 등) 제작 및 배포 등

에 비해 결과 활용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결과
의 공개를 통해 국민만족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각 부처의 국
민만족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참고자료: 국정과제 목록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과제 (주관부처)	
상 식 이 화 복 된 반 닦 한 나 라 (15개)	[약속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송위) [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8 안정적 주가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약속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과기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약속04] 경제제철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약속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전진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추진 (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송위·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약속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약속07]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금융체계 구축 (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약속0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약속09] 필요한 국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자립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제도에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약속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화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화부)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화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송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화부)
	다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자율과 과 장 만 대 미 (19개)
	자 유· 평 화 에 기 여 하 는 법 정 국 가 (18개)
	대 한 국 이 살 아 나 는 시 대 (107개)
미 간 이 닫 고 정 보 가 는 역 동 적 경 제 (26개)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화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재청) [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송위·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약속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약속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약속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약속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국조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약속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95 남북관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약속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99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산업부) [약속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입해 기여하겠습니다. 103 제2차군 수준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 [약속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행안부)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교육부)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행안부) [약속22]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산업부)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국토부)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 [약속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부)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중기부·행안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부·행안부)

13. 한국교육개발원⁹⁷⁾: 서울청사 매각 지연 개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한 종합적·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적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0.6%)이 감소한 220억 7,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교육개발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교육개발원	19,777	22,219	22,079	△140	△0.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 2월 충북혁신도시(충북 진천군)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기존의 서울청사(서울특별시 우면동)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서울청사와 진천청사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운영관리비, 감정평가비 등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9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음.

97) 세부사업: 한국교육개발원(1540-301)

〈한국교육개발원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재산세	서울청사	308,004	330,299	342,386	271,281	270,651
	진천청사	43,499	64,627	92,939	84,533	86,855
	관사	302	315	455	416	392
종합부동산세		299,082	369,211	429,323	323,665	323,665
소 계(A)		650,887	764,452	865,103	679,895	681,563
운영관리비(B)		144,101	149,740	139,221	145,977	145,977
감정평가비(C)		-	-	101,080	94,211	94,211
합 계(A+B+C/D+E+F)		794,988	914,192	1,105,404	920,083	921,751
출연금(D)		249,600	249,600	656,600	656,600	656,600
자채수입(E)		384,388	504,592	360,304	169,272	265,151
연구개발적립금(F)		161,000	160,000	88,500	94,211	-

* '24년 종합부동산세, 운영관리비, 감정평가비는 추정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2025년도 유지관리 비용 관련 예산으로는 재산세 3억 6,660만원, 종합부동산세 3억 4,000만원 포함한 9억 5,66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 관련 예산 요구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요구액
재산세	366,600
종합부동산세	340,000
소 계(A)	706,600
운영관리비(B)	150,000
감정평가비(C)	100,000
합 계(A+B+C)	956,6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청사 소재지는 개발제한구역(전체면적의 약 80%)과 비오톱 1등급(전체면적의 약 48%)⁹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전체면적의 약 87%) 등 토지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그 용도와 개발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청사 매각이 지연되었음.

○ 한국교육개발원은 서울청사 매각을 위하여 2010년부터 총 42회에 걸쳐 매각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 계약체결 후 중도 해지 등으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매각 추진 경과〉

기 간	주요내용	비 고
2010.12. ~ 2019.3.	- 입찰공고 30회 유찰 2회 계약체결 후 중도해지 - 2013.1.8.(한국방송예술진흥원) - 2017.1.5.(서희건설 자회사)	이사장 개인사유로 중도급 미납 서울시 인·허가 불허
2019.3.	◦ KEDI-SH 매각 양해각서 체결	
2020.7.	◦ KEDI-SH 토지거래계약허가 공동 신청	서초구 인·허가 불허
2022.2.	◦ SH측, KEDI 부집 매입의사 회신: 부지매입 어려움	
2022.5.~6.	◦ 매각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감정평가 금액: 913.8억원
2022.6.~8.	◦ KEDI 종전부동산 1~3차 매각 입찰공고 실시(유찰)	
2022.10.	◦ 매각 예정가격 감액(안) 이사회 승인	913.8억원 → 822.5억원
2022.11.~ 2023.7.	◦ KEDI 종전부동산 4~9차 매각 입찰공고 실시(유찰)	
2023.8.~10.	직전 감정평가금액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감정평가 실시 및 완료	
2023.10.~현재	정부 주관 관계기관과 종전부동산 매입 협의 중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그러나, 진천청사 이전 이후 7년 이상 서울청사 매각이 지연됨에

98) “비오톱”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별표 1에 따라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하며,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하므로 개발행위가 제한됨.(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부동산 소식)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매각이 원활히 진행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원의 경영상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으로 이전한 청사 차입금 627억 9,000만원으로 인해 약 52억 여원(2024년 4월 말 기준 누적이자)의 이자가 발생하였음.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서울청사, 진천청사 보유로 인하여 이중으로 발생하는바, 한국교육개발원은 2023년에 서울청사 재산세 2억 7,065만원, 진천청사 재산세 8,685만원, 종합부동산세 3억 2,366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7,989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음.

□ 또한 서울청사 재산세, 운영관리비, 감정평가비 납부를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의 출연금이 사용되고 있어 국가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되고 있으며,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해야 할 교육 정책에 관해 종합적인 연구와 개발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임.

□ 한국교육개발원은 서울 청사의 민간 매각이 어려움에 따라 정부 주관 관계기관과 매각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나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각이 진행되지 않아 2025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불가피한바, 관계기관 매각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등 서울청사 매각 지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 국토연구원⁹⁹⁾: 연구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연구과제 추진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2억 200만원(9.9%)이 증액된 243억 8,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국토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B-A)	(B-A)/A
국토연구원	20,919	22,185	24,387	2,202	9.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국토연구원의 2025년 기본연구사업비 예산안은 전년대비 동등한 9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99) 세부사업: 국토연구원(1533-301)

〈2025년도 기본연구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연구사업비	1.332	992	992	-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기본연구사업비는 20개의 기본연구과제 예산 8억 9,200만원, 수시연구사업 1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기본연구사업 예산안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	연구과제	2025 예산안	연구 기간	비고 (기초, 정책 과제)
국토 연구원	기본연구 사업	대전환 시대의 지역발전 전략:대 규모 개발의 한계와 대안 모색	80	1.1.~12.31.	기초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 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	81	1.1.~12.31.	정책
		저출생·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	80	1.1.~12.31.	기초
		개인탄소발자국 기반 지역 탄 소중립 대응 방안 연구: 데이 터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51	1.1.~12.31.	기초
		저출생시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 실천전략	32	1.1.~10.31.	정책
		지역특성 기반의 생활인구 제도 확대 방안 연구	32	1.1.~10.31.	정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산업입지 정책방향 연구	31	1.1.~10.31.	정책
		저출생시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적 지원방안	32	1.1.~10.31.	정책
		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거 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	32	1.1.~10.31.	정책

기관명	사업명	연구과제	2025 예산안	연구 기간	비고 (기초, 정책 과제)
		메가시티 공간전략 실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방안	62	1.1.~10.31.	정책
		베이비부모 세대의 여가공간 이용 특성과 도시정책 과제	32	1.1.~10.31.	정책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31	1.1.~10.31.	정책
		철도 및 도로 지화화를 통한 미래 도시공간 혁신방안 연구	32	1.1.~10.31.	정책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청년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32	1.1.~10.31.	정책
		공정과제 실현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선 방향 연구	32	1.1.~10.31.	정책
		건설산업 선제적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연구. 분야별 위기 유형화 및 AI활용 위기 감지 지표 발굴	32	1.1.~10.31.	기초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방도로의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62	1.1.~10.31.	정책
		이용자 행태 기반 친환경 모빌리티 발전 방안 연구	32	1.1.~10.31.	정책
		공간구조 모니터링을 위한 관심지점(POI) 빅데이터 활용방안: 중심지 기능 및 계층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62	1.1.~10.31.	정책
		국토 도시부문 분쟁취약국 대상 전후복구 및 재건 협력 방안 연구	32	1.1.~12.31.	기초
		수시연구사업	100	1.1.~12.31.	
		합 계	992		

□ 국토연구원은 2025년 기본연구사업으로 ‘개인탄소발자국 기반 지역 탄소중립 대응 방안 연구: 데이터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공정과제 실현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선 방향 연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방도로의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용자 행태 기반 친환경 모빌리

티 발전 방안 연구’ 등을 기초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임.

- 그러나 탄소중립과 부동산 보유세, 지방도로 운영,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연구는 각각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 각각 수행한 바 있음.

<관련 연구 현황>

연구과제명	선행연구	기관명
개인탄소발자국 기반 지역 탄소중립 대응 방안 연구: 데이터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과 인식 조사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주거 부문 탄소발자국 결정요인 분석 :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연구원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선 방향 연구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방도로의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개선 공동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인프라 정비 및 활용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이용자 행태 기반 친환경 모빌리티 발전 방안 연구	E-mobility 성장에 따른 석유·전력·신재생에너지 산업 대응 전략 연구(신재생에너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연구주제를 수행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연구원 별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한 연구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에서 이전의 연구내용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과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¹⁰⁰⁾에 따르면 연구원의 기본연구사업은 정관에 규정된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으로, 연구기관의 고유업무 및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탄소중립과 부동산 보유세, 지방도로 운영, 친환경 모빌리티 등의 연구주제는 정관에 규정된 국토연구원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특히,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평가·대응 관련 환경정책 및 기법 개방은 한국환경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 조세 및 재정분야의 제도·행정·정책에 관한 종합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했을 때, 각 연구과제를 조정하거나 타 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각 연구원 정관〉

기관명	정관 상 사업
국토 연구원	1. 국토 전역의 발전구상,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초국경 협력 등에 관한 연구 2.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관리, 안전국토 조성 등에 관한 연구 3.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계획, 관리, 재생 등에 관한 연구 4. 토지, 주택 및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및 관련 산업 등에 관한 연구 5.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관리 및 이용, 국내외 건설산업 육성 및 관리, 건설경제 등에 관한 연구 6. 국가공간정보정책, 스마트도시·공간, 위성정보 활용, 국토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

1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36p.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 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글로벌 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업 또는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환경 연구원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과 관리기법의 연구·개발,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환경정책 운용성과의 평가 2. 자연생태계 보전 및 환경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기법 개발 3. <u>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평가·대응 관련 환경정책 및 기법 개발</u> 4.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환경영향재평가 실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구 및 기법 개발·보급 5. 지구·지역환경문제, 환경 관련 국제협약 및 무역에 관한 연구 6. 환경기술과 녹색기술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및 기법 개발 7. 환경정보 생산·제공과 환경정책 교육·훈련·홍보 및 환경전문인력 육성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정·평가, 정보 생산·제공, 성과확산, 공동연구, 수탁 등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조세 재정연구 원	1. <u>조세 및 재정분야의 제도·행정·정책에 관한 종합연구</u> 2.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 4. 재정사업 평가 등에 관한 조사·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 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 또는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5. 한국교통연구원¹⁰¹⁾: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의 차별화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물류 정책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교통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4,300만원(△1.8%)이 감소한 185억 1,5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교통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교통연구원	18,991	18,858	18,515	△343	△1.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은 철도투자의 확대에 맞추어 철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철도 개통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추정을 통하여 철도투자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 철도투자 정책의 신뢰성 확립을 지원하며,

101) 세부사업: 한국교통연구원(1542-301)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의 투자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구상한 정책효과에 대한 검토 및 신규 효과들이 발굴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1억 4,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 내용	2025년 예산안
합 계		140,000
사업인건비	자료정리비	27,095
공공요금	우편통신비	1,200
수용비	사무용품비, 복사비, 인쇄비	9,449
연구기자재/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9,900
국내여비	국내출장 여비	6,556
연구정보활동비	학회참가비, DB 플랫폼 구독	19,700
전문가활용비	자문회의수당, 검독료	15,300
회의비	연구진과 내외부전문가 회의경비	10,800
외부용역비/부담금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자료 시각화	40,000

- 동 사업의 주요 연구내용은 ①국가철도투자 및 서비스 지수 개발, ② 철도사업 개통에 따른 철도투자효과 모니터링, ③철도투자 정책지원 으로서 철도투자의 개통 효과 및 지역발전 효과 제시로 철도사업의 정책성을 입증하려는 것임.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 주요내용〉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국가철도투자 및 서비스 지수 개발	- 국가철도투자 지수 개발(국가, 지역별로 구분) - 철도투자효과 측정 지표 개발
철도사업 개통에 따른 철도투자효과 모니터링	- 신규 개통된 철도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 조사 및 분석 - 서해선(홍성역~송산역), 중부내륙선(충주시~문경시) 등 주요 철도노선 개통 효과 - GTX-A 단계별 개통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 조사 및 분석 * 2024년 운정~서울, 수서~동탄 분리 운영, 2026년 운정~동탄 운영(삼성 미정차) 등에 대한 연단위 조사·분석
철도투자 정책지원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접근성 조사 및 지역간 격차 변화 분석 1기, 2기 GTX 사업추진 관련 정책이슈 대응 방안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및 도시철도망 효율적 확충 방안 - 철도사업의 정책성 분석 지원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은 이전에 동 연구과제와 유사한 주제로 2022년도에 ‘철도투자의 사회적 가치 추정과 활용방안’, 2023년도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철도정책 지원사업’, 2024년도에 ‘초광역권 실현을 위한 광역급행철도 추진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으므로 관련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연구과제와 유사한 선행연구 사례〉

연도	과제명	주요 연구내용
2022	철도투자의 사회적 가치 추정과 활용방안	- 철도투자의 사회적 가치 정의 - 해외 교통시설 투자평가체계 검토 - 생산성, 형평성, 유발수요 발생효과를 고려한 사회적 가치 추정방안 제시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정책효과 추정 가이드라인 제시

202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철도정책 지원사업	· 지방 철도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방안 제시 · 객관적이고 계량화 가능한 정책적 분석 및 철도의 영향 분석 · 국내 철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 · 철도사업의 정책효과 및 분석 방법 제시
2024	초광역권 실현을 위한 광역급행철도 추진방안	·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초광역경제권 발전 효과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고,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인하여 향상된 초광역경제권 발전 효과를 증명하여 이를 기초로 한 초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의 전략적인 추진방안 제시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2025년도 특수사업인 ‘교통부문 3대혁신 전략 지원사업’은 현 정부의 교통부문 중장기 중점추진 정책으로서 교통분야 3대 혁신분야 중 하나인 GTX와 관련하여 연차별 수도권,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접근성 조사 및 지역간 격차 분석 및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타당성 확보방안 및 법령개정안 마련 등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동 사업 역시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의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 연구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분야를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교통부문 3대혁신 전략 지원사업 연차별 주요내용〉

연도	세 부 내 용
1차년도 (2025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접근성 조사 및 지역간 격차 변화 분석 · 1기 신도시 주민의 주거이동·일자리 입지분석 및 접근성 분석 · 도로 입체적 확장·지화화 유형별 계획수립 관련 평가지표 개발, 정책지원 · 철도지화화 사업지원을 위한 사례 분석 및 영향권 특성조사, DB구축 · 국내외 교통SOC 투자재원 현황 및 사례조사
2차년도 (2026년)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접근성 조사 및 지역간 격차 변화 분석 · 2기 신도시 주민의 주거이동·일자리 입지분석 및 접근성 분석 · 도로 입체적 확장·지화화 유형별 교통혼잡 최소화 운영방안 마련 · 철도시설 지화화 통합역사 기준 마련 및 영향권 특성조사, DB구축 · 도로·철도시설 상부개발을 통한 민자수익성 확보 사례조사 및 타당성 확보방안
3차년도 (2027년)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접근성 조사 및 지역간 격차 변화 분석 · 3기 신도시 주민의 주거이동·일자리 입지분석 및 접근성 분석 · 도로 입체적 확장 및 지화화 유형별 법제도 정비 및 정책지원 · 철도지화화통합개발 지역사회 영향 분석 및 영향권 특성조사, DB구축 · 3대 혁신전략 투자재원 마련 위한 타당성 확보방안 및 법령개정안 마련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¹⁰²⁾: 지침에 부합하는 외부용역비 비목 편성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개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9,100만원(3.9%)이 증액된 103억 5,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259	9,959	10,350	391	3.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관 내부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공동연구에 대한 위탁비용

102) 세부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550-301)

을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분		개인 (외부연구진)	외부기관
기관 고유 사업	기본연구사업 8과제, 수시제외	29,000	226,150
	연구지원사업 6과제	-	12,000
일반 사업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I	8,000	196,200
	이주배경 청년 사회통합방안 연구	8,000	34,500
	2025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4,000	653,500
	2025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7,000	428,400
	통합유지보수 사업	-	189,085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	75,000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10,000	117,697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4,000	13,800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Ⅱ	8,000	16,000
합계		78,000	1,962,332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¹⁰³⁾에 따르면 외부
용역비 및 부담금은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과제를 외부기
관에 위탁한 경우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기관 내규 및 「국가계약

103) “외부기관에 위탁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일반적인 원고 위탁 및 외부용역 등은 지양하도록 하고, 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대규모 설문조사, 행사 대행과 외부용역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부용역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36p.

법」 등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서류 구비 후 집행하여야 함.

□ 그런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비목을 공동연구를 위탁하는 연구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편성한바, 이는 「국가계약법」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국가계약의 계약상대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¹⁰⁴⁾ 및 동법 시행규칙¹⁰⁵⁾에 따라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개인은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공동연구원의 보고서 집필 등 업무위탁에 대하여는 사업비 중 검토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강사료 등의 대가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전문가활용비 등의 예산 비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4)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105)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문 의 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담당	(6788-5111)
	(6788-51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담당	(6788-5109)
	(6788-5114)
	(6788-5115)